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7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 제2021-973호(2021.7.23.), 제2022-193호(2022.4.1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빛그린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 미분양률인 1.3% 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 면 적 : 4,073,833.2m²
(1-1단계 : 2,592,871.0m², 1-2단계 : 54,759.7m², 2단계 : 1,426,202.5m²)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기정)
 -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2년 4월 30일
 - 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변경)
 -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2년 4월 30일
 - 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 기정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p>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은 존치공장에 한함</p>
디지털 정보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첨단부품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금속 제조업(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p>1차금속 제조업(24)은 존치공장에 한함</p>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업(70) 	

• 변경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은 존치공장에 한함
디지털 정보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첨단부품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금속 제조업(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차금속 제조업(24)은 존치공장에 한함
연구개발	· 연구개발업(70)	
물류산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신설

나.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1-1단계	1-2단계	2단계			
합계	기정	2,691,969.1	1,653,724.0	38,040.3	1,000,204.8	100.0	증) 25,440.4
	변경	2,717,409.5	1,653,724.0	38,040.3	1,025,645.2	100.0	
광산업	기정	241,028.3	173,262.5	-	67,765.8	9.0	감) 20,181.4
	변경	220,846.9	173,262.5	-	47,584.4	8.1	
디지털 정보가전	기정	396,476.1	231,399.5	-	165,076.6	14.7	감)165,076.6
	변경	231,399.5	231,399.5	-	-	8.5	
자동차산업	기정	1,615,717.6	1,109,278.9	-	506,438.7	60.0	증) 341,188.0
	변경	1,956,905.6	1,109,278.9	-	847,626.7	72.0	
첨단부품 소재	기정	266,012.0	-	38,040.3	227,971.7	9.9	감) 200,217.9
	변경	65,794.1	-	38,040.3	27,753.8	2.5	
연구개발	기정	172,735.1	139,783.1	-	32,952.0	6.4	감) 1,726.0
	변경	171,009.1	139,783.1	-	31,226.0	6.3	
물류산업	기정	-	-	-	-	-	증) 71,454.3
	변경	71,454.3	-	-	71,454.3	2.6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유치업종 면적 변경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개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073,833.2	-	4,073,833.2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02,325.3	-	302,325.3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145.8	-	199,145.8	4.9	
	준주거지역	103,179.5	-	103,179.5	2.5	
공 업 지 역	소 계	3,285,033.2	감) 21,924.5	3,263,108.7	80.1	
	일반공업지역	3,141,556.2	감) 21,924.5	3,119,631.7	76.6	
	준공업지역	143,477.0	-	143,477.0	3.5	
녹 지 지 역	소 계	486,474.7	증) 21,924.5	508,399.2	12.5	
	자연녹지지역	486,474.7	증) 21,924.5	508,399.2	12.5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변경)

구 분	전체면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4,073,833.2	-	4,073,833.2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691,969.1	증) 25,440.4	2,717,409.5	66.0	66.7
제조시설용지	2,519,234.0	감) 44,287.9	2,474,946.1	61.8	60.8
연구시설용지	172,735.1	감) 1,726.0	171,009.1	4.2	4.2
물류시설용지	-	증) 71,454.3	71,454.3	-	1.7
주거시설용지	133,903.0	-	133,903.0	3.3	3.3
단독주택용지	106,057.6	-	106,057.6	2.6	2.6
근린생활시설	27,845.4	-	27,845.4	0.7	0.7
지원시설용지	115,109.2	-	115,109.2	2.8	2.8
지원시설	92,892.3	-	92,892.3	2.3	2.3
주유소	5,955.9	-	5,955.9	0.1	0.1
종교시설	4,095.7	-	4,095.7	0.1	0.1
공공지원시설	8,247.9	-	8,247.9	0.2	0.2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0.1
공공시설용지	1,132,851.9	감) 25,440.4	1,107,411.5	27.9	27.2
일반도로	596,429.7	감) 38,030.6	558,399.1	14.5	13.7
보행자전용도로	5,114.0	-	5,114.0	0.1	0.1
주차장	23,178.4	-	23,178.4	0.6	0.6
공원	134,573.6	-	134,573.6	3.3	3.3
녹지	282,703.3	증) 12,416.2	295,119.5	6.9	7.2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0.1
사회복지시설	1,050.0	-	1,050.0	0.1	0.0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0.1
가스공급설비	179.9	-	179.9	0.1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3	0.3
오수중계펌프장	1,883.0	-	1,883.0	0.1	0.1
배수지	4,809.3	-	4,809.3	0.1	0.1
하천	10,655.0	-	10,655.0	0.3	0.3
저류시설	37,881.7	-	37,881.7	0.9	0.9
농업기반시설	10,820.0	증) 174.0	10,994.0	0.3	0.3
구거	5,671.1	-	5,671.1	0.1	0.1

※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m² 중복결정

※ 공공지원시설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어린이집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 단계별(변경)

구 분	1단계(변경없음)		2단계(변경)				
	면 적(m ²)	구성비(%)	면 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2,647,630.7	65.0	1,426,202.5	-	1,426,202.5	35.0	35.0
산업시설용지	1,691,764.3	41.5	1,000,204.8	증) 25,440.4	1,025,645.2	24.5	25.2
제조시설용지	1,551,981.2	38.1	967,252.8	감) 44,287.9	922,964.9	23.7	22.7
연구시설용지	139,783.1	3.4	32,952.0	감) 1,726.0	31,226.0	0.8	0.8
물류시설용지	-	-	-	증) 71,454.3	71,454.3	-	1.7
주거시설용지	102,910.8	2.5	30,992.2	-	30,992.2	0.8	0.8
단독주택용지	78,392.7	1.9	27,664.9	-	27,664.9	0.7	0.7
근린생활시설	24,518.1	0.6	3,327.3	-	3,327.3	0.1	0.1
지원시설용지	101,066.9	2.5	14,042.3	-	14,042.3	0.3	0.3
지원시설	81,567.0	2.0	11,325.3	-	11,325.3	0.3	0.3
주유소	4,288.9	0.1	1,667.0	-	1,667.0	0.0	0.0
종교시설	3,045.7	0.1	1,050.0	-	1,050.0	0.0	0.0
공공지원시설	8,247.9	0.2	-	-	-	-	-
어린이집	3,917.4	0.1	-	-	-	-	-
공공시설용지	751,888.7	18.5	380,963.2	감) 25,440.4	355,522.8	9.4	8.7
일반도로	384,122.3	9.4	212,307.4	감) 38,030.6	174,276.8	5.1	4.3
보행자전용도로	2,869.0	0.1	2,245.0	-	2,245.0	0.0	0.0
주차장	19,931.4	0.5	3,247.0	-	3,247.0	0.1	0.1
공원	108,923.6	2.7	25,650.0	-	25,650.0	0.6	0.6
녹지	180,381.1	4.4	102,322.2	증) 12,416.2	114,738.4	2.5	2.8
공공청사	2,102.7	0.1	-	-	-	-	-
사회복지시설	-	-	1,050.0	-	1,050.0	0.1	0.0
전기공급설비	2,923.0	0.1	-	-	-	-	-
가스공급설비	119.9	0.0	60.0	-	60.0	0.1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0.3	-	-	-	-	-
오수중계펌프장	1,251.0	0.1	632.0	-	632.0	0.0	0.0
배수지	4,809.3	0.1	-	-	-	-	-
하천	-	-	10,655.0	-	10,655.0	0.3	0.3
저류시설	25,851.1	0.6	12,030.6	-	12,030.6	0.3	0.3
농업기반시설	56.0	0.0	10,764.0	증) 174.0	10,938.0	0.3	0.3
구거	5,671.1	0.1	-	-	-	-	-

○ 1단계 분할(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총괄조서(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151	37,053.6	601,543.7	7	7,993.0	176,605.6	49	7,268.0	76,939.7	95	21,792.6	321,198.5	26,799.9
	변경	147	35,213.6	563,513.1	6	6,131.0	137,451.1	48	7,322.0	79,773.7	93	21,760.6	319,762.0	26,526.3
대 로	기정	2	3,595.0	97,235.3	-	-	-	-	-	-	2	3,595.0	97,235.3	-
	변경	2	3,595.0	97,235.3	-	-	-	-	-	-	2	3,595.0	97,235.3	-
중 로	기정	52	24,073.0	390,503.7	7	7,993.0	176,605.6	6	1,389.0	21,640.5	39	14,691.0	192,257.6	-
	변경	48	22,473.0	355,640.7	6	6,131.0	137,451.1	6	1,811.0	27,970.5	36	14,531.0	190,219.1	-
소 로	기정	97	9,385.6	87,004.8	-	-	-	43	5,879.0	55,299.2	54	3,506.6	31,705.6	-
	변경	97	9,145.6	84,110.8	-	-	-	42	5,511.0	51,803.2	55	3,634.6	32,307.6	-
가각부	기정	-	-	26,799.9	-	-	-	-	-	-	-	-	-	26,799.9
	변경	-	-	26,526.3	-	-	-	-	-	-	-	-	-	26,526.3

※ 3개 노선 1-1, 1-2, 2단계 중복(대로3-1호선, 중로1-5호선, 중로3-26호선)

※ 가각부 면적(26,526.3㎡)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미시행 구간 면적

(2) 도로 총괄표(1-1단계)(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도로결정조서(1-1단계)(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단계 : 700m
기정	대로	3	2	27	보조 간선도로	229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39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1	보조 간선도로	1,540	대3-1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1	3	22.5	보조 간선도로	1,647	대3-1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4	22.5	보조 간선도로	586	동측구역계 덕림동 584-2	소2-5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2,246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1,951m
변경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805	대3-1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510m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153	중3-42	대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33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01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89	중2-4	중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276	대3-1	중2-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3	1	13.5	집산도로	1,477	동측구역계 삼거동 633-7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603	중3-1	중3-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334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81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5	13.5	집산도로	262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36	중3-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712	중1-1	중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260	중1-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187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10	13.5	집산도로	377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11	13.5	집산도로	298	중1-2	소3-4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331	중3-42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3	18	13.5	집산도로	609	중1-2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19	13.5	집산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227	중1-3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1	12	집산도로	142	중3-20	중3-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2	13.5	집산도로	773	중1-3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3	12	집산도로	493	중1-3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4	12	집산도로	199	중3-23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5	12	집산도로	218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14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4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61m
변경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1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58m
기정	중로	3	43	12	집산도로	434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76	중3-5	동측구역계 삼거리동7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소로	2	2	9.5	국지도로	260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0	중3-3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79	소2-6	소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8	중3-3	소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70	중3-2	소2-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05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74	중3-7	소2-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4	중3-7	소2-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25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114	소2-12	소2-1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70	소2-12	소2-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84	중3-8	소2-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38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65	중3-7	소2-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70	소2-18	소2-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29	9.5	국지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2	30	9.5	국지도로	108	중3-22	덕림동 526-1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1	9.5	국지도로	291	중1-3	중3-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2	9.5	국지도로	320	중1-4	소2-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3	9.5	국지도로	201	중1-3	소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113	중3-24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9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117	중3-25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107	중3-25	소2-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123	중1-3	덕림동109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74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 1084-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5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620-5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6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166-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	동측구역계 삼거동57-1	동측구역계 삼거동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6	중1-2	동측구역계 덕림동20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1	중1-2	동측구역계 덕림동산10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89	중3-17	동측구역계 덕림동산73-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95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28	북측구역계 덕림동703-1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32	소3-8	북측구역계 덕림동산3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20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8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9	소3-51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13	4	국지도로	86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산120-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4	4	국지도로	27	중1-3	북측구역계 외치리78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5	4	국지도로	70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8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6	4	국지도로	37	소2-38	북측구역계 외치리10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62	중3-25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5-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25	대3-1	중3-3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0	6	특수도로	17	대3-1	중3-3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1	6	특수도로	27	대3-1	중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2	6	특수도로	28	대3-1	중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3	6	특수도로	40	중1-2	1호경관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34	6	특수도로	66	중3-18	1호경관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35	6	특수도로	25	중3-18	중3-2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6	6	특수도로	18	중3-23	2호경관녹지 외치리85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7	6	특수도로	31	중1-3	중3-24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8	6	특수도로	22	대3-1	중3-25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9	6	특수도로	63	대3-1	중3-44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40	6	특수도로	35	대3-2	중3-1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48	6	특수도로	72	중3-12	중3-4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49	4~4.5	국지도로	114	중3-11	동측구역계 삼거동1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5	소2-1	동측구역계 삼거동3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297.6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3	3~4	국지도로	156	소3-49	동측구역계 삼거동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54	4	국지도로	78	소3-5	동측구역계 덕림동 204-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4) 도로 총괄표(1-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로결정조서(1-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로 총괄표(2단계)(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 각 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46	12,971.0	214,552.4	2	3,529.0	75,613.0	10	1,826.0	17,463.0	34	7,616.0	94,676.5	26,799.9
	변경	42	11,131.0	176,521.8	1	1,667.0	36,458.5	9	1,880.0	20,297.0	32	7,584.0	93,240.0	26,526.3
대 로	기정	-	700.0	14,112.0	-	-	-	-	-	-	-	700.0	14,112.0	-
	변경	-	700.0	14,112.0	-	-	-	-	-	-	-	700.0	14,112.0	-
중 로	기정	18	9,252.0	150,397.5	2	3,529.0	75,613.0	1	134.0	2,010.0	15	5,589.0	72,774.5	-
	변경	14	7,652.0	115,534.5	1	1,667.0	36,458.5	1	556.0	8,340.0	12	5,429.0	70,736.0	-
소 로	기정	28	3,019.0	23,243.0	-	-	-	9	1,692.0	15,453.0	19	1,327.0	7,790.0	-
	변경	28	2,779.0	20,349.0	-	-	-	8	1,324.0	11,957.0	20	1,455.0	8,392.0	-
가 각 부	기정	-	-	26,799.9	-	-	-	-	-	-	-	-	-	26,799.9
	변경	-	-	26,526.3	-	-	-	-	-	-	-	-	-	26,526.3

* 1-1, 1-2 및 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계별로 구분

(7) 도로결정조서(2단계)(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단계 : 700m
기정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2,246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1,951m
변경	중로	1	5	21	집산도로	805	대3-1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510m
폐지	중로	1	6	21	보조 간선도로	386	대3-1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	22.5	보조 간선도로	1,192	대3-1	남측구역계 영월리37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중로	1	7	22.5	보조 간선도로	1,157	대3-1	남측구역계 영월리37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34	소2-40	대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556	대3-1	대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신설	중로	3	13	13.5	집산도로	1,441	중1-7	중3-26	일반도로		금회	
기정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4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61m
변경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1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58m
기정	중로	3	27	13.5	집산도로	231	중1-5	중3-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8	13.5	집산도로	157	중1-5	중3-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9	13.5	집산도로	287	중1-5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0	13.5	집산도로	389	대3-1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1	13.5	집산도로	292	중1-6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2	13.5	집산도로	207	중1-5	북측구역계 외치리649-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중로	3	32	13.5	집산도로	67	중3-13	북측구역계 외치리649-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3	13.5	집산도로	840	중1-6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4	13.5	집산도로	188	중1-7	중3-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5	13.5	집산도로	190	중1-5	중3-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67	중1-7	외치리37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7	12	집산도로	561	중1-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8	12	집산도로	313	중3-36	중3-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9	12	집산도로	331	중3-38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94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3	41	12	집산도로	81	중1-7	소2-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신설	중로	3	45	13.5	국지도로	133	대3-1	중2-2	일반도로		금회	
폐지	소로	2	40	9.5	국지도로	368	대3-1	중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소로	2	41	9.5	국지도로	136	대3-1	소2-4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6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69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7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81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8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3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8	9.5	국지도로	774	중1-7	외치리760-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변경	소로	2	48	9.5	국지도로	830	중1-7	외치리75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신설	소로	2	51	9.5	국지도로	80	중1-7	소2-48	일반도로		금회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69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47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76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79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37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산34-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101	북측구역계 외치리648- 11	북측구역계 외치리산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49	중1-5	서측구역계 외치리8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2	6	국지도로	29	중3-13	서측구역계 외치리8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34	중1-5	서측구역계 외치리산10-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3	6	국지도로	136	중3-13	서측구역계 외치리산10-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4	4	국지도로	62	소3-23	서측구역계 외치리82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32	중1-7	서측구역계 월야리38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6	5	국지도로	30	소2-47	남측구역계 외치리764-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7	5	국지도로	18	중3-39	남측구역계 외치리365-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446	소2-40	남측구역계 외치리318-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443	중2-2	남측구역계 외치리318-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82	중3-25	경관녹지3호 외치리산52-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30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3	6	특수도로	129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4	6	특수도로	23	중1-7	소3-5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45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6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7	6	특수도로	33	중3-39	중3-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10	중3-39	소3-4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신설	소로	3	55	6	국지도로	67	중3-13	북측구역계 외치리산7-14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56	4	국지도로	83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산40-1	일반도로		금회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녹지(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82,703.3	증) 12,416.2	295,119.5	-	
1-1단계 소계			-	-	180,381.1	-	180,381.1	-	
소 계			완충녹지	-	10,936.5	-	10,936.5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 삼거리동 464-1 일원	5,532.8	-	5,532.8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 덕림동 524-9 일원	3,550.1	-	3,550.1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115일원	1,853.6	-	1,853.6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소 계			경관녹지	-	157,594.1	-	157,594.1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측구역계 일원	78,974.7	-	78,974.7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68,846.5	-	68,846.5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9,772.9	-	9,772.9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소 계			연결녹지	-	11,850.5	-	11,850.5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광산구 덕림동 475-7 일원	11,850.5	-	11,850.5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2단계 소계			-	-	102,322.2	증) 12,416.2	114,738.4		
소 계			완충녹지	-	33,023.8	감) 521.5	32,502.3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18-14 일원	17,137.7	-	17,137.7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69-1 일원	12,546.1	감) 521.5	12,024.6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62-8일원	3,340.0	-	3,340.0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소 계			경관녹지	-	69,298.4	증) 10,624.3	79,922.7	-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69,298.4	증) 10,624.3	79,922.7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소 계			연결녹지	-	-	증) 2,313.4	2,313.4	-	
신설	2	녹지	연결녹지	월야면 외치리 437-7 일원	-	증) 2,313.4	2,313.4	금회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용수공급(변경)

○ 주암댐 광역상수도 계통의 화순정수장(Q=100,000m³/일)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신설 송수관(D=500mm, 23km)을 통해 사업지구 내의 신설 배수지로 송수하여 지구 내 급수

구 분	용 수 량(m ³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109.57	감) 867.80	20,241.77	
생활용수	3,979.91	증) 231.23	4,211.14	
공업용수	17,129.66	감) 1,099.03	16,030.63	

나)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

(1) 오·폐수 발생량 및 처리계획(변경)

구 분		오 수 량(m ³ /일)			처 리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476.46	감) 380.63	11,095.83	-	
주거시설용지	생활하수	926.65	-	926.65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통한 처리	외치마을에서 유입
외부유입	생활하수	25.56	-	25.56		
산업시설용지	생활하수	2,453.30	증) 183.48	2,636.78		
	공업폐수	8,070.95	감) 564.11	7,506.84		

(2)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 계재생략

(3)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 계재생략

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변경)

- 기정

구 분	폐기물발생량(톤/일)			처 리 계 획	비 고
	1-1단계	1-2단계	2단계		
계	75.984	1.607	41.845		
생활 폐기물	14.338	0.303	7.896	생활 폐기물 - 분리수거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함평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적정 처리 사업장 폐기물(배출시설계) - 재활용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 재활용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사업장 폐기물	49.585	1.049	27.307		
지정 폐기물	12.061	0.255	6.642		

- 변경

구 분	폐기물발생량(톤/일)			처 리 계 획	비 고
	1-1단계	1-2단계	2단계		
계	95.578	3.271	52.815		
생활 폐기물	16.538	0.077	6.005	생활 폐기물 - 분리수거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함평군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적정 처리 사업장 폐기물(배출시설계) - 재활용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 재활용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사업장 폐기물	74.681	3.069	43.750		
지정 폐기물	4.359	0.125	3.060		

5)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변경)

가) 전력공급(변경)

(1) 전력수요량 및 공급계획(변경)

○ 본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후, 사업초기에는 인근의 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이며, 전력부하량 증가시 사업지구내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할 계획임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26,656	증)177,025	1,403,681	
산업시설용지	976,297	증)177,681	1,153,978	
주거시설용지	3,013	-	3,013	
지원시설용지	235,024	-	235,024	
공공시설용지	12,322	감) 656	11,666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계재생략

나) 에너지공급시설(변경)

(1) 에너지 수요량 및 공급계획(변경)

구 분	직접열 수요		간접열 수요		공 급 계 획	비고
	직접열 (Gcal/년)	LNG (천Nm ³ /년)	간접열 (Gcal/년)	LNG (천Nm ³ /년)		
기 정	계	1,122,450	106,394	886,827	86,087	• 본 사업지구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산업시설용지	1,116,699	105,848	801,459	76,828	
	주거시설용지	-	-	34,070	3,896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	-	21,434	2,533	
	취사용	5,751	546	-	-	
	냉방용	-	-	29,865	2,831	
변 경	계	1,168,025	110,713.3	892,378	86,627	• 본 사업지구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산업시설용지	1,161,358	110,081.0	810,532	77,729	
	주거시설용지	-	-	34,069	3,896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	-	20,010	2,370	
	취사용	6,667	632.3	-	-	
	냉방용	-	-	27,767	2,632	

(2)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계재생략

다) 통신시설(변경)

구 분	회 선 수		통 신 공 급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빛그린산업단지	4,473	4,439	㈜케이티와 협의 후 공급 예정	

6)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계재생략

7) 방재시설(변경없음) : 계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억원)	5,495	48	-	369	1,251	315	163	229	569	870	64	874	151	155	437
용지비	2,171	-	-	359	1,250	302	46	59	37	2	13	65	31	5	2
조성비	3,324	48	-	10	1	13	117	170	532	868	51	809	120	150	435

- 변경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억원)	5,495	48	-	369	1,251	315	163	229	569	870	64	874	151	155	237	200	
용지비	2,171	-	-	359	1,250	302	46	59	37	2	13	65	31	5	2	-	
조성비	3,324	48	-	10	1	13	117	170	532	868	51	809	120	150	235	200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전력공급(변경)

1) 전력수요량 예측(변경)

가) 산업용지 전력사용량 및 전력수요 예측(변경)

구 분		규 모 (㎡)	단위부하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가동률 (%)	평균부하 (kW)	부하율 (%)	최대부하 (kW)
기정	소 계	2,519,234.0	-	965,692		132,461		223,732
	광산업	241,028.3	657	158,424	85.0%	21,272	60.6	35,088
	디지털정보가전	396,476.1	363	143,772	83.4%	19,673	56.1	35,044
	자동차산업	1,615,717.6	344	555,807	82.4%	77,000	59.9	128,548
	첨단부품소재	266,012.0	405	107,689	84.7%	14,516	57.9	25,052
	산업시설설비용량	223,732 ÷ 0.95(역율) × 1.2(여유율) ÷ 1.3(부등율) = 217,391kVA						
변경	소 계	2,474,946.1	-	929,292		127,864		214,690
	광산업	220,846.9	657	145,152	85.0%	19,490	60.6	32,148
	디지털정보가전	231,399.5	363	83,911	83.4%	11,482	56.1	20,453
	자동차산업	1,956,905.6	344	673,595	82.4%	93,302	59.9	155,893
	첨단부품소재	65,794.1	405	26,634	84.7%	3,590	57.9	6,196
	산업시설설비용량	214,690 ÷ 0.95(역율) × 1.2(여유율) ÷ 1.3(부등율) = 208,606kVA						

주) 1. 가동률, 부하율 자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한국에너지공단, 2015.06

2. 평균부하 = 전력사용량 ÷ {8,760(hr/년) × 가동률}

3. 최대부하 = 평균부하 ÷ 부하율

나) 기타시설용지 전력수요 예측(변경)

- 기정

구분	규모 (m ²)	단위부하 (VA/m ²)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비고
계	2,101,668	-	151,347	-	75,040	
단독주택	212,115	30	6,363	35	2,227	
지원시설	366,926	133	48,801	50	24,401	
공공지원시설	16,496	104	1,716	40	686	
어린이집	7,835	104	815	40	326	
근린생활시설	83,536	95	7,936	50	3,968	
연구시설	604,573	133	80,408	50	40,204	
사회복지시설	2,100	104	218	40	87	
종교시설	8,191	60	491	50	246	
주유소	11,912	110	1,310	50	655	
폐수처리시설	12,877	100(VA/톤)	773	70	541	
폐수처리시설 관리동	6,751	104	702	50	351	
오수중계펌프장	1,883	15(VA/톤)	187	50	94	
공공청사	6,308	104	656	50	328	
변전소	869	104	90	50	45	
도로, 주차장	624,722.1	100VA/SET(신호등)+1.25	847	100	847	
공원	134,574	0.25	34	100	34	
설비용량	75,040 ÷ 1.3(부등률) = 57,723kVA					

- 주) 1. 단위부하 및 수용률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9호
 2. 단독주택 전력부하 : 연면적 × 30(VA/m²) + 세대수 × 2500(VA/호)
 3. 도로부분 교통신호등: 663set
 4. 오폐수발생량은 약 12천m³/일을 적용하여 계산함.
 5. 규모 계 오기 정정(2,101,419m² → 2,101,668m²)

- 변경

구분	규모 (m ²)	단위부하 (VA/m ²)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비고
계	2,304,895.1	-	186,513	-	92,567	
단독주택	212,115	30	8,921	35	3,122	
지원시설	367,015	133	48,813	50	24,407	
공공지원시설	16,496	104	1,716	50	858	
어린이집	7,835	104	815	50	408	
근린생활시설	83,536	95	7,936	50	3,968	
물류시설	250,090	133	33,262	50	16,631	
연구시설	598,532	133	79,605	50	39,803	
사회복지시설	2,100	104	218	40	87	
종교시설	8,191	60	491	50	246	
주유소	11,912	110	1,310	50	655	
폐수처리시설	12,877	100(VA/톤)	1,255	70	879	
폐수처리시설 관리동	3,863	104	402	50	201	
오수중계펌프장	1,883	15(VA/톤)	188	50	94	
공공청사	6,308	104	656	50	328	
변전소	877	104	91	50	46	
도로, 주차장	586,691.5	100VA/SET(신호등)+1.25	800	100	800	
공원	134,573.6	0.25	34	100	34	
설비용량	92,567 ÷ 1.3(부등률) = 71,205kVA					

- 주) 1. 단위부하 및 수용률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9호
 2. 단독주택 전력부하 : 연면적 × 30(VA/m²) + 세대수 × 2500(VA/호)
 3. 도로부분 교통신호등: 663set
 4. 오폐수발생량은 약 12천m³/일을 적용하여 계산함.

2)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3) 전기공급설비 설치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나. 열에너지 공급계획(변경)

1) 에너지 수요량(변경)

가) 산업용지 에너지수요 예측(변경)

○ 산업시설은 업종별 원단위에 직/간접열 비율을 적용한 후 간접열 부하를 산정토록 하며, 직접열은 연료를 연소하여 직접 가열하는 것으로 그 부하패턴 또는 최대부하는 열공급 방안 수립에 의미가 없으므로 간접열을 대상을 최대부하를 산정함.

(1) 산업시설용지 열수요 예측(변경)

구 분		면 적 (㎡)	직접열사용량 (Gcal/년)	간접열사용량 (Gcal/년)	계 (Gcal/년)	비 고
기정	광산업	241,028.3	179,566	158,114	337,681	
	디지털정보가전	396,476.1	54,952	60,938	115,890	
	자동차산업	1,615,717.6	774,575	474,051	1,248,627	
	첨단부품소재	266,012.0	107,606	72,065	179,671	
	계	2,519,234.0	1,116,699	765,168	1,881,869	
변경	광산업	220,846.9	164,531	144,876	309,407	
	디지털정보가전	231,399.5	32,072	35,566	67,638	
	자동차산업	1,956,905.6	938,141	574,156	1,512,297	
	첨단부품소재	65,794.1	26,614	17,824	44,438	
	계	2,474,946.1	1,161,358	772,422	1,933,780	

(2) 산업시설용지 최대열수요 예측(변경)

구 분		간접열 (Gcal/년)	가동률	가동시간 (hr)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최대부하 (Gcal/h)
기정	광산업	158,114	0.850	7,446	21.2	62.5	34.0
	디지털정보가전	60,938	0.834	7,308	8.3	62.5	13.3
	자동차산업	474,051	0.824	7,218	65.7	62.5	105.1
	첨단부품소재	72,065	0.847	7,419	9.7	62.5	15.5
	계	765,168			104.9		167.9
동시 사용률 고려 최대부하 : $167.9 \times 0.8 = 134.3\text{Gcal/h}$							
변경	광산업	144,876	0.850	7,447	19.5	62.5	31.1
	디지털정보가전	35,566	0.834	7,308	4.9	62.5	7.8
	자동차산업	574,156	0.824	7,219	79.5	62.5	127.2
	첨단부품소재	17,824	0.847	7,419	2.4	62.5	3.8
	계	772,422			106.3		169.9
동시 사용률 고려 최대부하 : $169.9 \times 0.8 = 135.9\text{Gcal/h}$							

주) 1. 가동률 : [자료: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 2002.9]

2. 가동시간=가동률×8760hr/년

3. 평균부하=간접열/가동시간

4. 최대부하=평균부하/부하율

나) 기타 시설용지 열수요 예측(변경)

구 분	난방면적 (㎡)	연간 열수요량(Gcal/년)			최대열 부하(Mcal/h)			
		난방	급탕	계	난방	급탕	계	
기정	계	1,096,019	74,385	17,410	91,795	68,430	7,294	74,514
	단독주택	180,298	21,486	8,240	29,726	8,629	2,705	11,334
	지원시설	293,541	13,859	3,204	17,063	18,164	1,468	19,631
	근린생활시설	66,829	3,718	626	4,344	3,982	334	4,316
	연구시설	483,658	31,764	4,527	36,291	33,224	2,418	34,433
	공공지원시설	13,196	562	117	679	827	66	893
	어린이집	7,835	122	72	194	303	54	357
	사회복지시설	25,692	1,529	324	1,853	1,674	127	1,801
	종교시설	1,680	72	15	87	105	8	113
	주유소	6,555	429	29	458	504	13	517
	폐수처리시설	8,333	461	152	613	460	42	502
	공공청사	3,376	122	42	164	183	24	207
	변전소	5,026	261	62	323	375	35	410
변경	계	1,100,795	74,692	17,500	92,189	69,042	7,342	74,270
	단독주택	180,298	21,487	8,240	29,726	8,629	2,705	10,588
	지원시설	293,612	13,862	3,205	17,067	18,168	1,468	19,636
	공공지원시설	13,197	684	163	847	986	92	1,079
	어린이집	6,268	325	78	403	468	44	512
	근린생활시설	66,829	3,717	626	4,343	3,982	334	4,149
	물류시설	37,514	1,771	410	2,181	2,321	188	2,509
	연구시설	478,826	31,447	4,482	35,929	32,892	2,394	34,089
	사회복지시설	1,680	72	15	86	105	8	114
	종교시설	6,553	429	29	458	504	13	517
	주유소	8,338	461	152	613	460	42	501
	폐수처리시설	1,932	70	24	94	105	14	118
	공공청사	5,046	262	62	324	377	35	412
변전소	702	105	14	118	45	5	46	

다) 기타시설용지 취사용 열수요 예측(변경)

• 본 사업지구는 LNG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취사용 연료는 LNG를 선정하여 공급

구분	연면적 (㎡)	세대수	원단위(Mcal/㎡.년) (Mcal/세대.년)	사용량 (Mcal/년)	사용량 (천Nm ³ /년)	
기정	계	1,327,612	1,023		6,037,026	573.3
	단독주택	212,115	1,023	1,486.80	1,520,996	144
	지원시설	366,926		2.84	1,042,069	99
	공공지원시설	16,496		4.20	69,282	7
	어린이집	7,835		10.70	83,832	8
	근린생활시설	83,536		17.71	1,479,431	140
	연구시설	604,573		2.84	1,716,987	163
	사회복지시설	2,100		4.20	8,820	1
	종교시설	8,191		2.84	23,264	2
	주유소	11,912		2.84	33,830	3
	폐수처리시설	6,751		4.20	28,354	3
	공공청사	6,308		4.20	26,494	3
	변전소	869		4.20	3,667	0.3
	변경	계	1,568,870	1,023	-	6,667,333
단독주택		212,115	1,023	1,486.80	1,520,996	144
지원시설		367,015	-	2.84	1,042,323	99
공공지원시설		16,496	-	4.20	69,283	7
어린이집		7,835	-	4.20	32,907	3
근린생활시설		83,536	-	17.71	1,479,423	140
물류시설		250,090	-	2.84	710,256	67
연구시설		598,532	-	2.84	1,699,831	161
사회복지시설		2,100	-	4.20	8,820	1
종교시설		8,191	-	2.84	23,262	2
주유소		11,912	-	2.84	33,830	3
폐수처리시설		3,863	-	4.20	16,225	2
공공청사		6,308	-	4.20	26,494	3
변전소		877	-	4.20	3,683	0.3

주) 취사용 연료의 적용원단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9호』 참고

2) 총 연료 공급량 산정(변경)

- 직접열과 간접열로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함

가) 직접열 연료수요량

- 본 사업지구 직접열 수요의 연료사용 비율은 LNG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100% LNG를 적용하며 연료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다음과 같음

구분	직접열 (Gcal/년)	LNG(%)	LNG			비고		
			Gcal	천Nm ³ /년	TOE/년			
기정	산업시설	광산업	179,566	100	179,566	17,020	17,956	
		디지털정보가전	54,952	100	54,952	5,209	5,495	
		자동차산업	774,575	100	774,575	73,419	77,457	
		첨단부품소재	107,606	100	107,606	10,200	10,761	
		소계	1,116,699		1,116,699	105,848	111,669	
	기타시설(취사용)	5,751		5,751	546	574		
	직접열계	1,122,450		1,122,450	106,394	112,243		
변경	산업시설	광산업	164,531	100	164,531	15,595	16,453	
		디지털정보가전	32,072	100	32,072	3,040	3,207	
		자동차산업	938,141	100	938,141	88,923	93,814	
		첨단부품소재	26,614	100	26,614	2,523	2,662	
		소계	1,161,358	-	1,161,358	110,081	116,136	
	기타시설(취사용)	6,667	-	6,667	632	666		
	직접열계	1,168,025		1,168,025	110,713	116,802		

주) LNG발열량 : 10,550kcal/Nm³

나) 간접열 연료수요량

- 사업지구 기타시설 용지의 난방, 급탕, 냉방용이며 연료는 LNG로 산정

구 분		간접열 (Gcal/년)	LNG (%)	LNG			비고
				Gcal	천Nm³/년	TOE/년	
기정	산업시설	광산업	158,114	100.0	158,114	14,987	15,811
		디지털정보가전	60,938	100.0	60,938	5,776	6,094
		자동차산업	474,051	100.0	474,051	44,934	47,405
		첨단부품소재	72,065	100.0	72,065	6,831	7,207
		연구시설	36,291		36,291	4,300	4,537
	소 계	801,459		801,459	76,828	81,054	
	주거시설	단독주택	29,726		29,726	3,381	3,567
		근린생활시설	4,344		4,344	515	543
		소 계	34,070		34,070	3,896	4,110
	지원공공	지원시설	17,063		17,063	2,022	2,132
		공공지원시설	679		679	80	84
		어린이집	194		194	23	24
		사회복지시설	1,853		1,853	215	237
		종교시설	87		87	10	11
		주유소	458		458	55	58
		폐수처리시설	613		613	71	75
		공공청사	164		164	19	20
		변전소	323		323	38	39
		소 계	21,434		21,434	2,533	2,680
	냉방용		29,865		29,865	2,831	2,986
간접열 총계		886,827		886,827	86,087	90,830	
변경	산업시설	광산업	144,876	100.0	144,876	13,732	14,487
		디지털정보가전	35,566	100.0	35,566	3,371	3,556
		자동차산업	574,156	100.0	574,156	54,422	57,415
		첨단부품소재	17,824	100.0	17,824	1,689	1,782
		물류시설	2,181		2,181	258	272
		연구시설	35,929		35,929	4,257	4,491
	소 계	810,532		810,532	77,729	82,003	
	주거시설	단독주택	29,726		29,726	3,381	3,567
		근린생활시설	4,343		4,343	515	543
		소 계	34,069		34,069	3,896	4,110
	지원공공	지원시설	17,067		17,067	2,022	2,133
		공공지원시설	847		847	100	106
		어린이집	403		403	48	51
		사회복지시설	86		86	10	11
		종교시설	458		458	54	57
		주유소	613		613	73	77
		폐수처리시설	94		94	11	12
		공공청사	324		324	38	40
		변전소	118		118	14	15
		소 계	20,010		20,010	2,370	2,502
냉방용		27,767		27,767	2,632	2,777	
간접열 총계		892,378		892,378	86,627	91,392	

주) 1. 연료발열량 = LNG발열량 : 10,550kcal/Nm³

2. 연료수요량 산정 = 열사용량(Gcal/년) × 열 손실계수 ÷ 연료발열량

3. 열손실 계수 = 산업시설의 경우 이미 원단위에 손실률이 기 반영되었으며 기타시설은 1.25 적용

3)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변경)

- 본 사업지구의 열 공급방식으로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4호)”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공급기준을 분석한 결과 연료사용량은 충족되나, 열밀도가 공급대상규모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기정

구분	항 목	요 건	사업지구	판정
신규산업 단지	연료사용량	• 연간 5만TOE이상	9.0만toe	O
	열밀도	• 60Gcal/km ² .h이상	49.4Gcal/km ² .h	X

○ 변경

구분	항 목	요 건	사업지구	판정
신규산업 단지	연료사용량	• 연간 5만TOE이상	8.9만toe	O
	열밀도	• 60Gcal/km ² .h이상	52.5Gcal/km ² .h	X

4)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73,833.2	-	4,073,833.2	100.0	
주거 지역	소계	302,325.3	-	302,325.3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145.8	-	199,145.8	4.9
	준주거지역	103,179.5	-	103,179.5	2.5
공업 지역	소계	3,285,033.2	감) 21,924.5	3,263,108.7	80.1
	일반공업지역	3,141,556.2	감) 21,924.5	3,119,631.7	76.6
	준공업지역	143,477.0	-	143,477.0	3.5
녹지 지역	소계	486,474.7	증) 21,924.5	508,399.2	12.5
	자연녹지지역	486,474.7	증) 21,924.5	508,399.2	12.5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빛그린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기정) 3,141,556.2 (변경) 3,119,631.7 감) 21,924.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면적 변경
-	빛그린 산업단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486,474.7 (변경) 508,399.2 증) 21,924.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계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총괄표(변경)

○ 총괄(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151	37,053.6	601,543.7	7	7,993.0	176,605.6	49	7,268.0	76,939.7	95	21,792.6	321,198.5	26,799.9
	변경	147	35,213.6	563,513.1	6	6,131.0	137,451.1	48	7,322.0	79,773.7	93	21,760.6	319,762.0	26,526.3
대 로	기정	2	3,595.0	97,235.3	-	-	-	-	-	-	2	3,595.0	97,235.3	-
	변경	2	3,595.0	97,235.3	-	-	-	-	-	-	2	3,595.0	97,235.3	-
중 로	기정	52	24,073.0	390,503.7	7	7,993.0	176,605.6	6	1,389.0	21,640.5	39	14,691.0	192,257.6	-
	변경	48	22,473.0	355,640.7	6	6,131.0	137,451.1	6	1,811.0	27,970.5	36	14,531.0	190,219.1	-
소 로	기정	97	9,385.6	87,004.8	-	-	-	43	5,879.0	55,299.2	54	3,506.6	31,705.6	-
	변경	97	9,145.6	84,110.8	-	-	-	42	5,511.0	51,803.2	55	3,634.6	32,307.6	-
가각부	기정	-	-	26,799.9	-	-	-	-	-	-	-	-	-	26,799.9
	변경	-	-	26,526.3	-	-	-	-	-	-	-	-	-	26,526.3

※ 3개 노선 1-1, 1-2, 2단계 중복(대로3-1호선, 중로1-5호선, 중로3-26호선)

※ 가각부 면적(26,526.3㎡)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미시행 구간 면적

○ 1-1단계(변경없음) : 계재생략

○ 1-2단계(변경없음) : 계재생략

○ 2단계 (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46	12,971.0	214,552.4	2	3,529.0	75,613.0	10	1,826.0	17,463.0	34	7,616.0	94,676.5	26,799.9
	변경	42	11,131.0	176,521.8	1	1,667.0	36,458.5	9	1,880.0	20,297.0	32	7,584.0	93,240.0	26,526.3
대 로	기정	-	700.0	14,112.0	-	-	-	-	-	-	-	700.0	14,112.0	-
	변경	-	700.0	14,112.0	-	-	-	-	-	-	-	700.0	14,112.0	-
중 로	기정	18	9,252.0	150,397.5	2	3,529.0	75,613.0	1	134.0	2,010.0	15	5,589.0	72,774.5	-
	변경	14	7,652.0	115,534.5	1	1,667.0	36,458.5	1	556.0	8,340.0	12	5,429.0	70,736.0	-
소 로	기정	28	3,019.0	23,243.0	-	-	-	9	1,692.0	15,453.0	19	1,327.0	7,790.0	-
	변경	28	2,779.0	20,349.0	-	-	-	8	1,324.0	11,957.0	20	1,455.0	8,392.0	-
가각부	기정	-	-	26,799.9	-	-	-	-	-	-	-	-	-	26,799.9
	변경	-	-	26,526.3	-	-	-	-	-	-	-	-	-	26,526.3

※ 1-1, 1-2 및 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계별로 구분

(나) 도로 결정조서(변경)

○ 1-1단계(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단계 : 700m
기정	대로	3	2	27	보조 간선도로	229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39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2	21	보조 간선도로	1,540	대3-1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1	3	22.5	보조 간선도로	1,647	대3-1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4	22.5	보조 간선도로	586	동측구역계 덕림동 584-2	소2-5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2,246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1,951m
변경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805	대3-1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510m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153	중3-42	대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33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01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89	중2-4	중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276	대3-1	중2-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3	1	13.5	집산도로	1,477	동측구역계 삼거동 633-7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603	중3-1	중3-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334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81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5	13.5	집산도로	262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36	중3-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712	중1-1	중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260	중1-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187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10	13.5	집산도로	377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11	13.5	집산도로	298	중1-2	소3-4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331	중3-42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3	18	13.5	집산도로	609	중1-2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9	13.5	집산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227	중1-3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1	12	집산도로	142	중3-20	중3-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2	13.5	집산도로	773	중1-3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3	12	집산도로	493	중1-3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4	12	집산도로	199	중3-23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5	12	집산도로	218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14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4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61m
변경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1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58m
기정	중로	3	43	12	집산도로	434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76	중3-5	동측구역계 삼거리7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소로	2	2	9.5	국지도로	260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0	중3-3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79	소2-6	소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8	중3-3	소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70	중3-2	소2-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05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74	중3-7	소2-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4	중3-7	소2-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25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114	소2-12	소2-1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70	소2-12	소2-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84	중3-8	소2-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38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65	중3-7	소2-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70	소2-18	소2-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29	9.5	국지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2	30	9.5	국지도로	108	중3-22	덕림동 526-1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1	9.5	국지도로	291	중1-3	중3-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2	9.5	국지도로	320	중1-4	소2-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3	9.5	국지도로	201	중1-3	소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113	중3-24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9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117	중3-25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107	중3-25	소2-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123	중1-3	덕림동109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74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 1084-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5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620-5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6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166-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	동측구역계 삼거동57-1	동측구역계 삼거동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6	중1-2	동측구역계 덕림동20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1	중1-2	동측구역계 덕림동산10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89	중3-17	동측구역계 덕림동산73-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95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28	북측구역계 덕림동703-1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32	소3-8	북측구역계 덕림동산3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20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8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9	소3-51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13	4	국지도로	86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산120-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4	4	국지도로	27	중1-3	북측구역계 외치리78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5	4	국지도로	70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8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6	4	국지도로	37	소2-38	북측구역계 외치리10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62	중3-25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5-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25	대3-1	중3-3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0	6	특수도로	17	대3-1	중3-3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1	6	특수도로	27	대3-1	중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2	6	특수도로	28	대3-1	중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3	6	특수도로	40	중1-2	1호경관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34	6	특수도로	66	중3-18	1호경관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35	6	특수도로	25	중3-18	중3-2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6	6	특수도로	18	중3-23	2호경관녹지 외치리85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7	6	특수도로	31	중1-3	중3-24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8	6	특수도로	22	대3-1	중3-25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9	6	특수도로	63	대3-1	중3-44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40	6	특수도로	35	대3-2	중3-1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48	6	특수도로	72	중3-12	중3-4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49	4~4.5	국지도로	114	중3-11	동측구역계 삼거동1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5	소2-1	동측구역계 삼거동3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297.6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소로	3	53	3~4	국지도로	156	소3-49	동측구역계 삼거동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4	4	국지도로	78	소3-5	동측구역계 덕림동 204-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 1-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단계 : 700m
기정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2,246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1,951m
변경	중로	1	5	21	집산도로	805	대3-1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510m
폐지	중로	1	6	21	보조 간선도로	386	대3-1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7	22.5	보조 간선도로	1,192	대3-1	남측구역계 영월리37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중로	1	7	22.5	보조 간선도로	1,157	대3-1	남측구역계 영월리37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34	소2-40	대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556	대3-1	대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신설	중로	3	13	13.5	집산도로	1,441	중1-7	중3-26	일반도로		금회	
기정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4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61m
변경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1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58m
기정	중로	3	27	13.5	집산도로	231	중1-5	중3-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8	13.5	집산도로	157	중1-5	중3-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9	13.5	집산도로	287	중1-5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0	13.5	집산도로	389	대3-1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1	13.5	집산도로	292	중1-6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2	13.5	집산도로	207	중1-5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32	13.5	집산도로	67	중3-13	외치리649-12 북측구역계 외치리649-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3	13.5	집산도로	840	중1-6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4	13.5	집산도로	188	중1-7	중3-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5	13.5	집산도로	190	중1-5	중3-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67	중1-7	외치리37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7	12	집산도로	561	중1-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8	12	집산도로	313	중3-36	중3-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9	12	집산도로	331	중3-38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94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폐지	중로	3	41	12	집산도로	81	중1-7	소2-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신설	중로	3	45	13.5	국지도로	133	대3-1	중2-2	일반도로		금회	
폐지	소로	2	40	9.5	국지도로	368	대3-1	중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소로	2	41	9.5	국지도로	136	대3-1	소2-4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6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69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7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81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8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3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8	9.5	국지도로	774	중1-7	외치리760-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변경	소로	2	48	9.5	국지도로	830	중1-7	외치리75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신설	소로	2	51	9.5	국지도로	80	중1-7	소2-48	일반도로		금회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69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47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76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79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37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산34-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101	북측구역계 외치리648- 11	북측구역계 외치리산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49	중1-5	서측구역계 외치리8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2	6	국지도로	29	중3-13	서측구역계 외치리8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34	중1-5	서측구역계 외치리산10-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3	6	국지도로	136	중3-13	서측구역계 외치리산10-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4	4	국지도로	62	소3-23	서측구역계 외치리82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32	중1-7	서측구역계 월야리38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6	5	국지도로	30	소2-47	남측구역계 외치리764-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7	5	국지도로	18	중3-39	남측구역계 외치리365-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446	소2-40	남측구역계 외치리318-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443	중2-2	남측구역계 외치리318-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82	중3-25	경관녹지3호 외치리산52-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30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3	6	특수도로	129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4	6	특수도로	23	중1-7	소3-5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45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6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7	6	특수도로	33	중3-39	중3-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10	중3-39	소3-4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신설	소로	3	55	6	국지도로	67	중3-13	북측구역계 외치리산7-14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56	4	국지도로	83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산40-1	일반도로		금회	

(다)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2,246m → 805m (감 1,441m) - 1단계 : 295m (변경없음) - 2단계 : 1,951m → 510m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중로1-7호선	중로1-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1,192m → 1,157 (감 35m) 	
중로2-2호선, 소로2-40호선	중로2-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134m → 556m (증 422m) ※ 소로2-40호선(폭 9.5m, 연장 368m) 폐지 	
중로3-26호선	중로3-2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1,234m → 1,231m (감 3m) - 1단계 : 173m (변경없음) - 2단계 : 1,061m → 1,058m (변경) 	
중로3-32호선	중로3-3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207m → 67m (감 140m) 	
소로2-48호선	소로2-4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774m → 830m (증 56m) 	
소로3-22호선	소로3-2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49m → 29m (감 20m) 	
소로3-23호선	소로3-2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34m → 136m (증 102m) 	
소로3-28호선	소로3-2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446m → 443m (감 3m)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13.5m - 연장: 1,44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2-41호선	중로3-4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13.5m - 연장: 133m ※ 소로2-41호선(폭 9.5m, 연장 136m) 폐지 	
중로3-41호선	소로2-5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9.5m - 연장: 80m ※ 중로3-41호선(폭 12m, 연장 81m) 폐지 	
-	소로3-5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6m - 연장: 67m 	
-	소로3-5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4m - 연장: 83m 	
중로1-6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21m - 연장: 386m 	
중로3-3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292m 	
중로3-33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840m 	
중로3-34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188m 	
중로3-35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190m 	
중로3-4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2m - 연장: 81m 	
소로2-40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9.5m - 연장: 368m 	
소로2-4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9.5m - 연장: 136m 	
소로3-2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6m - 연장: 101m 	

(2)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녹지(변경)

(가)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82,703.3	증) 12,416.2	295,119.5	-	
1-1단계 소계			-	-	180,381.1	-	180,381.1	-	
소 계			완충녹지	-	10,936.5	-	10,936.5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 삼거리 464-1 일원	5,532.8	-	5,532.8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 덕림동 524-9 일원	3,550.1	-	3,550.1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115일원	1,853.6	-	1,853.6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소 계			경관녹지	-	157,594.1	-	157,594.1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측구역계 일원	78,974.7	-	78,974.7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68,846.5	-	68,846.5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9,772.9	-	9,772.9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소 계			연결녹지	-	11,850.5	-	11,850.5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광산구 덕림동 475-7 일원	11,850.5	-	11,850.5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2단계 소계			-	-	102,322.2	증) 12,416.2	114,738.4		
소 계			완충녹지	-	33,023.8	감) 521.5	32,502.3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18-14 일원	17,137.7	-	17,137.7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69-1 일원	12,546.1	감) 521.5	12,024.6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62-8일원	3,340.0	-	3,340.0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소 계			경관녹지	-	69,298.4	증) 10,624.3	79,922.7	-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69,298.4	증) 10,624.3	79,922.7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소 계			연결녹지	-	-	증) 2,313.4	2,313.4	-	
신설	2	녹지	연결녹지	월야면 외치리 437-7 일원	-	증) 2,313.4	2,313.4	금회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2단계)	녹지 (완충녹지)	• 면적변경 12,546.1m ² → 12,024.6m ² (감 521.5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③ (2단계)	녹지 (경관녹지)	• 면적변경 69,298.4m ² → 79,922.7m ² (증 10,624.3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② (2단계)	녹지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2,313.4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연결녹지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변경)

○ 총괄(변경)

구 분	전체면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4,073,833.2	-	4,073,833.2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691,969.1	증) 25,440.4	2,717,409.5	66.0	66.7
제조시설용지	2,519,234.0	감) 44,287.9	2,474,946.1	61.8	60.8
연구시설용지	172,735.1	감) 1,726.0	171,009.1	4.2	4.2
물류시설용지	-	증) 71,454.3	71,454.3	-	1.7
주거시설용지	133,903.0	-	133,903.0	3.3	3.3
단독주택용지	106,057.6	-	106,057.6	2.6	2.6
근린생활시설	27,845.4	-	27,845.4	0.7	0.7
지원시설용지	115,109.2	-	115,109.2	2.8	2.8
지원시설	92,892.3	-	92,892.3	2.3	2.3
주유소	5,955.9	-	5,955.9	0.1	0.1
종교시설	4,095.7	-	4,095.7	0.1	0.1
공공지원시설	8,247.9	-	8,247.9	0.2	0.2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0.1
공공시설용지	1,132,851.9	감) 25,440.4	1,107,411.5	27.9	27.2
일반도로	596,429.7	감) 38,030.6	558,399.1	14.5	13.7
보행자전용도로	5,114.0	-	5,114.0	0.1	0.1
주차장	23,178.4	-	23,178.4	0.6	0.6
공원	134,573.6	-	134,573.6	3.3	3.3
녹지	282,703.3	증) 12,416.2	295,119.5	6.9	7.2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0.1
사회복지시설	1,050.0	-	1,050.0	0.1	0.0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0.1
가스공급설비	179.9	-	179.9	0.1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3	0.3
오수중계펌프장	1,883.0	-	1,883.0	0.1	0.1
배수지	4,809.3	-	4,809.3	0.1	0.1
하천	10,655.0	-	10,655.0	0.3	0.3
저류시설	37,881.7	-	37,881.7	0.9	0.9
농업기반시설	10,820.0	증) 174.0	10,994.0	0.3	0.3
구거	5,671.1	-	5,671.1	0.1	0.1

※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m² 중복결정

※ 공공지원시설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어린이집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 단계별(변경)

구 분	1단계(변경없음)		2단계(변경)				
	면 적(m ²)	구성비(%)	면 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2,647,630.7	65.0	1,426,202.5	-	1,426,202.5	35.0	35.0
산업시설용지	1,691,764.3	41.5	1,000,204.8	증) 25,440.4	1,025,645.2	24.5	25.2
제조시설용지	1,551,981.2	38.1	967,252.8	감) 44,287.9	922,964.9	23.7	22.7
연구시설용지	139,783.1	3.4	32,952.0	감) 1,726.0	31,226.0	0.8	0.8
물류시설용지	-	-	-	증) 71,454.3	71,454.3	-	1.7
주거시설용지	102,910.8	2.5	30,992.2	-	30,992.2	0.8	0.8
단독주택용지	78,392.7	1.9	27,664.9	-	27,664.9	0.7	0.7
근린생활시설	24,518.1	0.6	3,327.3	-	3,327.3	0.1	0.1
지원시설용지	101,066.9	2.5	14,042.3	-	14,042.3	0.3	0.3
지원시설	81,567.0	2.0	11,325.3	-	11,325.3	0.3	0.3
주유소	4,288.9	0.1	1,667.0	-	1,667.0	0.0	0.0
종교시설	3,045.7	0.1	1,050.0	-	1,050.0	0.0	0.0
공공지원시설	8,247.9	0.2	-	-	-	-	-
어린이집	3,917.4	0.1	-	-	-	-	-
공공시설용지	751,888.7	18.5	380,963.2	감) 25,440.4	355,522.8	9.4	8.7
일반도로	384,122.3	9.4	212,307.4	감) 38,030.6	174,276.8	5.1	4.3
보행자전용도로	2,869.0	0.1	2,245.0	-	2,245.0	0.0	0.0
주차장	19,931.4	0.5	3,247.0	-	3,247.0	0.1	0.1
공원	108,923.6	2.7	25,650.0	-	25,650.0	0.6	0.6
녹지	180,381.1	4.4	102,322.2	증) 12,416.2	114,738.4	2.5	2.8
공공청사	2,102.7	0.1	-	-	-	-	-
사회복지시설	-	-	1,050.0	-	1,050.0	0.1	0.0
전기공급설비	2,923.0	0.1	-	-	-	-	-
가스공급설비	119.9	0.0	60.0	-	60.0	0.1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0.3	-	-	-	-	-
오수중계펌프장	1,251.0	0.1	632.0	-	632.0	0.0	0.0
배수지	4,809.3	0.1	-	-	-	-	-
하천	-	-	10,655.0	-	10,655.0	0.3	0.3
저류시설	25,851.1	0.6	12,030.6	-	12,030.6	0.3	0.3
농업기반시설	56.0	0.0	10,764.0	증) 174.0	10,938.0	0.3	0.3
구거	5,671.1	0.1	-	-	-	-	-

○ 1단계 분할(변경없음) : 계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73,833.2	-	4,073,833.2	100.0	
주거 지역	소계	302,325.3	-	302,325.3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145.8	-	199,145.8	4.9	
	준주거지역	103,179.5	-	103,179.5	2.5	
공업 지역	소계	3,285,033.2	감) 21,924.5	3,263,108.7	80.1	
	일반공업지역	3,141,556.2	감) 21,924.5	3,119,631.7	76.6	
	준공업지역	143,477.0	-	143,477.0	3.5	
녹지 지역	소계	486,474.7	증) 21,924.5	508,399.2	12.5	
	자연녹지지역	486,474.7	증) 21,924.5	508,399.2	12.5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빛그린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기정) 3,141,556.2 (변경) 3,119,631.7 감) 21,924.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면적 변경
-	빛그린 산업단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정) 486,474.7 (변경) 508,399.2 증) 21,924.5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면적 변경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는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사항(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 총괄(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151	37,053.6	601,543.7	7	7,993.0	176,605.6	49	7,268.0	76,939.7	95	21,792.6	321,198.5	26,799.9
	변경	147	35,213.6	563,513.1	6	6,131.0	137,451.1	48	7,322.0	79,773.7	93	21,760.6	319,762.0	26,526.3
대 로	기정	2	3,595.0	97,235.3	-	-	-	-	-	-	2	3,595.0	97,235.3	-
	변경	2	3,595.0	97,235.3	-	-	-	-	-	-	2	3,595.0	97,235.3	-
중 로	기정	52	24,073.0	390,503.7	7	7,993.0	176,605.6	6	1,389.0	21,640.5	39	14,691.0	192,257.6	-
	변경	48	22,473.0	355,640.7	6	6,131.0	137,451.1	6	1,811.0	27,970.5	36	14,531.0	190,219.1	-
소 로	기정	97	9,385.6	87,004.8	-	-	-	43	5,879.0	55,299.2	54	3,506.6	31,705.6	-
	변경	97	9,145.6	84,110.8	-	-	-	42	5,511.0	51,803.2	55	3,634.6	32,307.6	-
가각부	기정	-	-	26,799.9	-	-	-	-	-	-	-	-	-	26,799.9
	변경	-	-	26,526.3	-	-	-	-	-	-	-	-	-	26,526.3

※ 3개 노선 1-1, 1-2, 2단계 중복(대로3-1호선, 중로1-5호선, 중로3-26호선)

※ 가각부 면적(26,526.3㎡)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미시행 구간 면적

○ 1-1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1-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46	12,971.0	214,552.4	2	3,529.0	75,613.0	10	1,826.0	17,463.0	34	7,616.0	94,676.5	26,799.9
	변경	42	11,131.0	176,521.8	1	1,667.0	36,458.5	9	1,880.0	20,297.0	32	7,584.0	93,240.0	26,526.3
대 로	기정	-	700.0	14,112.0	-	-	-	-	-	-	-	700.0	14,112.0	-
	변경	-	700.0	14,112.0	-	-	-	-	-	-	-	700.0	14,112.0	-
중 로	기정	18	9,252.0	150,397.5	2	3,529.0	75,613.0	1	134.0	2,010.0	15	5,589.0	72,774.5	-
	변경	14	7,652.0	115,534.5	1	1,667.0	36,458.5	1	556.0	8,340.0	12	5,429.0	70,736.0	-
소 로	기정	28	3,019.0	23,243.0	-	-	-	9	1,692.0	15,453.0	19	1,327.0	7,790.0	-
	변경	28	2,779.0	20,349.0	-	-	-	8	1,324.0	11,957.0	20	1,455.0	8,392.0	-
가각부	기정	-	-	26,799.9	-	-	-	-	-	-	-	-	-	26,799.9
	변경	-	-	26,526.3	-	-	-	-	-	-	-	-	-	26,526.3

※ 1-1, 1-2 및 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계별로 구분

(나) 도로 결정조서(변경)

○ 1-1단계(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단계 : 700m
기정	대로	3	2	27	보조 간선도로	229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1	21	보조 간선도로	39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2	21	보조 간선도로	1,540	대3-1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1	3	22.5	보조 간선도로	1,647	대3-1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4	22.5	보조 간선도로	586	동측구역계 덕림동 584-2	소2-5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2,246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1,951m
변경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805	대3-1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510m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153	중3-42	대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336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01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89	중2-4	중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276	대3-1	중2-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중로	3	1	13.5	집산도로	1,477	동측구역계 삼거동 633-7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603	중3-1	중3-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334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81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5	13.5	집산도로	262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36	중3-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712	중1-1	중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260	중1-1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187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10	13.5	집산도로	377	대3-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11	13.5	집산도로	298	중1-2	소3-4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12	12	집산도로	331	중3-42	중3-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중로	3	18	13.5	집산도로	609	중1-2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9	13.5	집산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227	중1-3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1	12	집산도로	142	중3-20	중3-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2	13.5	집산도로	773	중1-3	중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3	12	집산도로	493	중1-3	중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4	12	집산도로	199	중3-23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5	12	집산도로	218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14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4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61m
변경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1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58m
기정	중로	3	43	12	집산도로	434	중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76	중3-5	동측구역계 삼거리7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소로	2	2	9.5	국지도로	260	중1-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0	중3-3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79	소2-6	소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80	중3-2	중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8	중3-3	소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70	중3-2	소2-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05	중3-2	중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74	중3-7	소2-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4	중3-7	소2-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25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114	소2-12	소2-1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70	소2-12	소2-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84	중3-8	소2-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38	중3-7	중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65	중3-7	소2-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70	소2-18	소2-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85	중3-8	중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29	9.5	국지도로	126	중1-2	중3-1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2	30	9.5	국지도로	108	중3-22	덕림동 526-1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1	9.5	국지도로	291	중1-3	중3-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2	9.5	국지도로	320	중1-4	소2-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3	9.5	국지도로	201	중1-3	소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10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113	중3-24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90	중3-23	소2-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8	8	국지도로	117	중3-25	중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107	중3-25	소2-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123	중1-3	덕림동1094-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74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 1084-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5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620-5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6	소2-9	동측구역계 삼거동166-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	동측구역계 삼거동57-1	동측구역계 삼거동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6	중1-2	동측구역계 덕림동208-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1	중1-2	동측구역계 덕림동산10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89	중3-17	동측구역계 덕림동산73-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95	중1-4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28	북측구역계 덕림동703-1	북측구역계 덕림동산2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32	소3-8	북측구역계 덕림동산3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20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8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44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9	소3-51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13	4	국지도로	86	중1-3	북측구역계 덕림동산120-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4	4	국지도로	27	중1-3	북측구역계 외치리783-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15	4	국지도로	70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8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6	4	국지도로	37	소2-38	북측구역계 외치리10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62	중3-25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15-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25	대3-1	중3-3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0	6	특수도로	17	대3-1	중3-3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1	6	특수도로	27	대3-1	중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2	6	특수도로	28	대3-1	중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3	6	특수도로	40	중1-2	1호경관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34	6	특수도로	66	중3-18	1호경관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35	6	특수도로	25	중3-18	중3-2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36	6	특수도로	18	중3-23	2호경관녹지 외치리85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7	6	특수도로	31	중1-3	중3-24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8	6	특수도로	22	대3-1	중3-25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39	6	특수도로	63	대3-1	중3-44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40	6	특수도로	35	대3-2	중3-1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48	6	특수도로	72	중3-12	중3-4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49	4~4.5	국지도로	114	중3-11	동측구역계 삼거동1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5	소2-1	동측구역계 삼거동3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5-513호 (2015.7.20.)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297.6	중3-23	북측구역계 외치리산1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소로	3	53	3~4	국지도로	156	소3-49	동측구역계 삼거동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4	4	국지도로	78	소3-5	동측구역계 덕림동 204-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 1-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단계 : 700m
기정	중로	1	5	21	보조 간선도로	2,246	대3-1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1,951m
변경	중로	1	5	21	집산도로	805	대3-1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95m 2단계 : 510m
폐지	중로	1	6	21	보조 간선도로	386	대3-1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1	7	22.5	보조 간선도로	1,192	대3-1	남측구역계 영월리37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중로	1	7	22.5	보조 간선도로	1,157	대3-1	남측구역계 영월리37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34	소2-40	대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556	대3-1	대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7-731호 (2017.11.8.)	
신설	중로	3	13	13.5	집산도로	1,441	중1-7	중3-26	일반도로		금회	
기정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4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61m
변경	중로	3	26	13.5	집산도로	1,231	중1-5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173m 2단계 : 1,058m
기정	중로	3	27	13.5	집산도로	231	중1-5	중3-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8	13.5	집산도로	157	중1-5	중3-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29	13.5	집산도로	287	중1-5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0	13.5	집산도로	389	대3-1	중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1	13.5	집산도로	292	중1-6	중3-3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2	13.5	집산도로	207	중1-5	북측구역계 외치리649-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중로	3	32	13.5	집산도로	67	중3-13	북측구역계 외치리649-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3	13.5	집산도로	840	중1-6	중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4	13.5	집산도로	188	중1-7	중3-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중로	3	35	13.5	집산도로	190	중1-5	중3-3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67	중1-7	외치리37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7	12	집산도로	561	중1-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8	12	집산도로	313	중3-36	중3-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9	12	집산도로	331	중3-38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94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폐지	중로	3	41	12	집산도로	81	중1-7	소2-4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신설	중로	3	45	13.5	국지도로	133	대3-1	중2-2	일반도로		금회	
폐지	소로	2	40	9.5	국지도로	368	대3-1	중2-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소로	2	41	9.5	국지도로	136	대3-1	소2-4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6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69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7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81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8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3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8	9.5	국지도로	774	중1-7	외치리760-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변경	소로	2	48	9.5	국지도로	830	중1-7	외치리75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신설	소로	2	51	9.5	국지도로	80	중1-7	소2-48	일반도로		금회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69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472-6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76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79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37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산34-1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101	북측구역계 외치리648-11	북측구역계 외치리산2-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49	중1-5	서측구역계 외치리8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2	6	국지도로	29	중3-13	서측구역계 외치리8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34	중1-5	서측구역계 외치리산10-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3	6	국지도로	136	중3-13	서측구역계 외치리산10-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4	4	국지도로	62	소3-23	서측구역계 외치리820-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32	중1-7	서측구역계 월야리383-23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6	5	국지도로	30	소2-47	남측구역계 외치리764-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7	5	국지도로	18	중3-39	남측구역계 외치리365-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446	소2-40	남측구역계 외치리318-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8	6	국지도로	443	중2-2	남측구역계 외치리318-3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1	6	특수도로	82	중3-25	경관녹지3호 외치리산52-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30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3	6	특수도로	129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4	6	특수도로	23	중1-7	소3-5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45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6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7	6	특수도로	33	중3-39	중3-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10	중3-39	소3-4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신설	소로	3	55	6	국지도로	67	중3-13	북측구역계 외치리산7-14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56	4	국지도로	83	중3-26	북측구역계 외치리산40-1	일반도로		금회	

(다)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2,246m → 805m (감 1,441m) - 1단계 : 295m (변경없음) - 2단계 : 1,951m → 510m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중로1-7호선	중로1-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1,192m → 1,157 (감 35m) 	
중로2-2호선, 소로2-40호선	중로2-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134m → 556m (증 422m) ※ 소로2-40호선(폭 9.5m, 연장 368m) 폐지 	
중로3-26호선	중로3-2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1,234m → 1,231m (감 3m) - 1단계 : 173m (변경없음) - 2단계 : 1,061m → 1,058m (변경) 	
중로3-32호선	중로3-3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207m → 67m (감 140m) 	
소로2-48호선	소로2-4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774m → 830m (증 56m) 	
소로3-22호선	소로3-2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49m → 29m (감 20m) 	
소로3-23호선	소로3-2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34m → 136m (증 102m) 	
소로3-28호선	소로3-28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변경 연장: 446m → 443m (감 3m)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13.5m - 연장: 1,44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2-41호선	중로3-4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13.5m - 연장: 133m ※ 소로2-41호선(폭 9.5m, 연장 136m) 폐지 	
중로3-41호선	소로2-5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9.5m - 연장: 80m ※ 중로3-41호선(폭 12m, 연장 81m) 폐지 	
-	소로3-55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6m - 연장: 67m 	
-	소로3-5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 폭원: 4m - 연장: 83m 	
중로1-6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21m - 연장: 386m 	
중로3-3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292m 	
중로3-33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840m 	
중로3-34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188m 	
중로3-35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3.5m - 연장: 190m 	
중로3-4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12m - 연장: 81m 	
소로2-40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9.5m - 연장: 368m 	
소로2-4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9.5m - 연장: 136m 	
소로3-21호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폐지 - 폭원: 6m - 연장: 101m 	

(2)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녹지(변경)

(가)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82,703.3	증) 12,416.2	295,119.5	-	
1-1단계 소계			-	-	180,381.1	-	180,381.1	-	
소 계			완충녹지	-	10,936.5	-	10,936.5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 삼거리 464-1 일원	5,532.8	-	5,532.8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 덕림동 524-9 일원	3,550.1	-	3,550.1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115일원	1,853.6	-	1,853.6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소 계			경관녹지	-	157,594.1	-	157,594.1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측구역계 일원	78,974.7	-	78,974.7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68,846.5	-	68,846.5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9,772.9	-	9,772.9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소 계			연결녹지	-	11,850.5	-	11,850.5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광산구 덕림동 475-7 일원	11,850.5	-	11,850.5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2단계 소계			-	-	102,322.2	증) 12,416.2	114,738.4		
소 계			완충녹지	-	33,023.8	감) 521.5	32,502.3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18-14 일원	17,137.7	-	17,137.7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69-1 일원	12,546.1	감) 521.5	12,024.6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월야면 외치리 362-8일원	3,340.0	-	3,340.0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소 계			경관녹지	-	69,298.4	증) 10,624.3	79,922.7	-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69,298.4	증) 10,624.3	79,922.7	국토부제2020-524호 (2020.7.22)	
소 계			연결녹지	-	-	증) 2,313.4	2,313.4	-	
신설	2	녹지	연결녹지	월야면 외치리 437-7 일원	-	증) 2,313.4	2,313.4	금회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2단계)	녹지 (완충녹지)	• 면적변경 12,546.1m ² → 12,024.6m ² (감 521.5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③ (2단계)	녹지 (경관녹지)	• 면적변경 69,298.4m ² → 79,922.7m ² (증 10,624.3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변경
② (2단계)	녹지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2,313.4m ²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연결녹지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제조시설용지(변경)

○ 제조시설용지(1-1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제조시설용지(1-2단계)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제조시설용지(2단계)(변경)

- 획지분할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구모가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기정]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제조5	①	57,260.8	-1	6,934.7		제조5	⑥		-10	5,493.9	
			-2	12,381.5			⑦	36,861.3	-1	5,058.0	
			-3	8,142.3					-2	4,808.6	
			-4	16,341.8					-3	9,881.8	
			-5	13,460.5					-4	9,004.3	
	②	5,340.0		5,340.0					-5	8,108.6	
	③	53,996.2	-1	5,375.3			⑧	33,034.8	-1	17,379.0	
			-2	5,407.9					-2	15,655.8	
			-3	5,407.9			⑨	43,106.9	-1	4,238.3	
			-4	5,407.9					-2	5,772.3	
			-5	5,399.1					-3	5,778.0	
			-6	5,399.1					-4	5,741.8	
			-7	5,407.9					-5	5,470.9	
			-8	5,407.9					-6	5,508.0	
			-9	5,407.9					-7	5,508.0	
			-10	5,375.3					-8	5,089.6	
	④	55,819.2	-1	5,345.3			⑩	9,079.2	-1	4,733.9	
			-2	5,378.0					-2	4,345.3	
			-3	5,378.0			⑪	37,412.4	-1	4,698.6	
			-4	5,378.0					-2	4,654.5	
			-5	5,342.3					-3	4,654.5	
			-6	11,166.7					-4	4,698.6	
			-7	9,803.2					-5	4,698.6	
			-8	8,027.7					-6	4,654.5	
	⑤	52,313.2	-1	5,463.2					-7	4,654.5	
			-2	5,330.8					-8	4,698.6	
			-3	5,330.8			⑫	3,768.8		3,768.8	
			-4	5,330.8			⑬	23,765.0	-1	5,418.0	
			-5	5,347.9					-2	10,563.5	
			-6	12,995.1					-3	4,666.0	
			-7	12,514.6					-4	3,117.5	
	⑥	53,905.6	-1	5,493.9			⑭	40,775.3	-1	6,837.2	
			-2	5,360.4					-2	6,869.3	
			-3	5,360.4					-3	8,279.1	
			-4	5,360.4					-4	5,083.3	
			-5	5,377.7					-5	6,869.2	
			-6	5,377.7					-6	6,837.2	
			-7	5,360.4		제조6	①	18,790.7	-1	5,849.6	
			-8	5,360.4					-2	3,659.3	
			-9	5,360.4					-3	4,458.6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면적(m ²)			번호	면적(m ²)	번호	면적(m ²)	
제조6	①		-4	4,823.2		제조7	③	78,241.8	-1	6,502.6	
	②	16,473.2	-1	2,885.0					-2	6,580.0	
			-2	2,925.0					-3	6,580.0	
			-3	2,885.0					-4	6,580.0	
			-4	7,778.2					-5	6,580.0	
	③	32,501.9	-1	4,212.3					-6	6,502.6	
			-2	3,482.6					-7	12,674.0	
			-3	4,306.7					-8	13,160.0	
			-4	3,963.8					-9	13,082.6	
			-5	4,381.1		제조8	①	92,232.6	-1	10,720.0	
			-6	4,161.6					-2	6,905.5	
			-7	1,833.8					-3	6,763.8	
			-8	2,135.0					-4	5,617.5	
			-9	4,025.0					-5	5,617.5	
제조7	①	70,345.3	-1	3,893.0					-6	8,601.5	
			-2	6,417.1					-7	6,607.0	
			-3	9,412.3					-8	6,610.5	
			-4	12,291.9					-9	9,876.4	
			-5	14,551.0					-10	7,875.3	
			-6	12,983.7					-11	7,248.9	
			-7	10,796.3					-12	9,788.7	
	②	79,384.6	-1	6,561.9			②	45,980.9	-1	12,949.9	
			-2	6,639.5					-2	8,054.0	
			-3	6,639.5					-3	8,765.7	
			-4	6,639.5					-4	8,088.8	
			-5	6,639.5					-5	8,122.5	
			-6	6,561.9			③	12,787.3	-1	4,320.2	
			-7	6,565.4					-2	4,279.7	
			-8	6,643.0					-3	4,187.4	
			-9	6,643.0			④	14,075.8	-1	3,253.9	
			-10	6,643.0					-2	3,038.8	
			-11	6,643.0					-3	3,010.1	
			-12	6,565.4					-4	4,773.0	

※ 제조5-①은 1-1단계, 2단계로 분리됨

[변경]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도면번 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m ²)	번호	면적(m ²)			번호	면적(m ²)	번호	면적(m ²)	
제조5	②	5,340.0		5,340.0		제조5	⑩		-5	6,869.2	
	③	23,765.0	-1	5,418.0					-6	6,837.2	
			-2	10,563.5			⑪	55,819.3	-1	5,345.3	
			-3	4,666.0					-2	5,378.0	
			-4	3,117.5					-3	5,378.0	
	④	3,762.6	-1	3,762.6					-4	5,378.0	
	⑤	8,893.9	-1	4,733.9					-5	5,342.3	
			-2	4,160.0					-6	18,040.6	
	⑥	33,061.9	-1	17,406.1					-7	10,957.1	
			-2	15,655.8		제조6	①	23,603.5	-1	7,162.0	
	⑦	42,930.5	-1	7,592.8					-2	7,162.0	
			-2	5,778.0					-3	9,279.5	
			-3	5,741.8			②	23,980.9	-1	5,042.0	
			-4	5,470.9					-2	5,398.5	
			-5	5,508.0					-3	4,377.2	
			-6	5,508.0					-4	4,019.9	
			-7	7,331.0					-5	5,143.3	
	⑧	37,412.4	-1	4,698.6		제조7	①	500,000.7	-1	500,000.7	
			-2	4,654.5		제조8	①	13,780.8	-1	13,780.8	
			-3	4,654.5			②	11,036.2	-1	11,036.2	
			-4	4,698.6			③	17,051.9	-1	17,051.9	
			-5	4,698.6		제조9	①	7,313.9	-1	3,224.3	
			-6	4,654.5					-2	4,089.6	
			-7	4,654.5			②	5,136.3	-1	5,136.3	
			-8	4,698.6			③	6,236.4	-1	3,253.9	
	⑨	53,996.2	-1	5,375.3					-2	2,982.5	
			-2	5,407.9			④	9,067.2	-1	4,533.6	
			-3	5,407.9					-2	4,533.6	
			-4	5,407.9							
			-5	5,399.1							
			-6	5,399.1							
			-7	5,407.9							
			-8	5,407.9							
			-9	5,407.9							
			-10	5,375.3							
	⑩	40,775.3	-1	6,837.2							
			-2	6,869.3							
			-3	8,279.1							
			-4	5,083.3							

나) 연구시설용지(변경)

- 연구시설용지(1-1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연구시설용지(2단계)(변경)
 - 획지분할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구모가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기정]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연구2	①	12,605.1	-1	6,266.2		연구2	②		-2	5,147.4	
			-2	6,338.9					-3	5,400.3	
	②	20,346.9	-1	4,527.6					-4	5,271.6	

[변경]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연구2	①	12,112.5	-1	6,056.2		연구2	②		-2	4,904.4	
			-2	6,056.3					-3	4,924.9	
	②	19,113.5	-1	4,960.6					-4	4,323.6	

다) 물류시설용지(변경)

- 물류시설용지(2단계)(신설)
 - 획지분할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구모가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번호	면적(㎡)	
물류1	①	17,685.6	-1	9,196.3		물류1	②		-2	15,960.4	
			-2	8,489.3					-3	16,063.5	
	②	53,768.7	-1	10,887.1					-4	10,857.7	

라)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제조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제조1 ~ 제조8	제조시설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법, 건축법령 및 각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따른다. 단,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3호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는 최고 높이 60m 이하(지침도 참조)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시설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제조1 ~ 제조5-① (변경없음)	제조시설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유발 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등), 용수 다소비 업종(레미콘, 아스콘 등) 및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법, 건축법령 및 각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따른다. 단,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3호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는 최고높이 60m 이하(지침도 참조)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시설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제조5-② ~ 제조9 (변경)	제조시설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유발 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등), 용수 다소비 업종(레미콘, 아스콘 등) 및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5-②~⑩,6,8,9) 건축물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고높이 25m - 건축물의 1개층 높이는 5.0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한다. 단,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높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 제조시설에 필요한 구조물(급수설비, 환기설비,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 최고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후산림인 병풍산 및 월악산 7부 능선(130.0m)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제조7 건축물 및 구조물의 높이 제한은 관계법령에 따른 심의 및 허가권자의 허가 등에 따르도록 한다. 단, 배후산림인 병풍산 및 월악산 7부 능선(130.0m)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구조물 최고높이 초과시 건축물 허가권자가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 제조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부는 주도로 방면으로 배치하고, 두 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 기준)에 건축물의 전면을 배치한다. • 대지 내 하역장은 보행가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행가로에서 적치물이 노출될 경우 경계부에 차폐식재를 조성한다. •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단면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면을 형성할 경우 입면디자인의 분절을 계획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재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재료 본연의 질감과 색채를 살릴 수 있는 외장재 계획을 통하여 과도한 색채 사용에 따른 부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마감수준으로 계획한다. • 마감처리 되지 않은 콘크리트 외벽의 노출을 금하며, 저가의 페널, 드라이비트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저품질의 외장재 사용을 지양한다. • 석계열의 외장재 적용시 단지 전체의 통일감과 조화를 고려하여 무채색 계열을 사용한다. • 건축물 폭이 25m 이상일 경우 입면의 벽면분절, 형태변화, 재질, 색채의 변화 등을 통해 시각적 분절이 되도록 한다. • 외장재를 통한 입면분절 시 3개 이하의 외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창문 및 개구부 설치시 도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치토록 하고, 연속적인 선상에 배치하도록 하여 수직·수평의 입면분절 요소로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변, 가로 결절부, 주출입 구간의 인지성 확보를 위해 주외장재와 대비되는 외장재 (투시성 외장재 적용 권장) 또는 색채적용을 권장한다. • 외벽 창호의 유리는 무채색 계열을 적용하고, 청색·녹색 칼라유리 사용은 지양한다. • 건축물 전면에는 업종 고유의 패턴을 활용한 그래픽디자인은 허용하되, 광고 등을 위한 문구사용을 금한다. • 부속 건축물간 재질, 색채, 형태, 사인물 등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벽면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냉난방 실외기, 우수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매립하되, 기능상 노출이 불가피 할 시 가림막 설치 또는 입면과 동일 색채를 적용하여 외부로 노출을 완화한다. • 보행가로변에서 조망되는 차량이동 램프시설은 입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외장재 및 색채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 및 옥상 등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환기설비, 전기전화 통신설비,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지붕 및 옥상난간에 무채색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건축물 지붕과 일체화하여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에 관한 사항 • 담장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가로경관)’ 제85조 (담장 특화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 채 • 제조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 제조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나) 연구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연구1, 연구2, 연구4	연구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업종계획에 따른다) • 상기 시설의 운영·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륜	• 350% 이하	
		높 이	• 국토법, 건축법령 및 각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연구3	연구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마. 연구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높 이	• 국토법, 건축법령 및 각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연구시설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연구1, 연구4 (변경없음)	연구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높 이	• 국토법, 건축법령 및 각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연구시설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연구2 (변경)	연구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고높이 25m - 1개층 높이는 5.0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한다. 단,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높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 연구시설에 필요한 구조물(급수설비, 환기설비,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여 불가피하게 건축물 최고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후산림인 병풍산 및 월악산 7부 능선(130.0m)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p>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전면부는 주도로 방면으로 배치하고, 두 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 기준)에 건축물의 전면을 배치한다. • 대지 내 하역장은 보행가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행가로에서 적치물이 노출될 경우 경계부에 차폐식재를 조성한다. •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단면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변을 형성할 경우 입면디자인의 분절을 계획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재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재료 본연의 질감과 색채를 살릴 수 있는 외장재 계획을 통하여 과도한 색채 사용에 따른 부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마감수준으로 계획한다. • 마감처리 되지 않은 콘크리트 외벽의 노출을 금하며, 저가의 패널, 드라이비트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저품질의 외장재 사용을 지양한다. • 석재계열의 외장재 적용시 단지 전체의 통일감과 조화를 고려하여 무채색 계열을 사용한다. • 건축물 폭이 25m 이상일 경우 입면의 벽면분절, 형태변화, 재질, 색채의 변화 등을 통해 시각적 분절이 되도록 한다. • 외장재를 통한 입면분절 시 3개 이하의 외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창문 및 개구부 설치시 도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치토록 하고, 연속적인 선상에 배치하도록 하여 수직·수평의 입면분절 요소로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변, 가로 결절부, 주출입 구간의 인지성 확보를 위해 주외장재와 대비되는 외장재 (투시성 외장재 적용 권장) 또는 색채적용을 권장한다. • 외벽 창호의 유리는 무채색 계열을 적용하고, 청색·녹색 칼라유리 사용은 지양한다. • 건축물 전면에는 업종 고유의 패턴을 활용한 그래픽디자인은 허용하되, 광고 등을 위한 문구사용을 금한다. • 부속 건축물간 재질, 색채, 형태, 사인물 등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벽면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냉난방 실외기, 우수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매립하되, 기능상 노출이 불가피 할 시 가림막 설치 또는 입면과 동일 색채를 적용하여 외부로 노출을 완화한다. • 보행가로변에서 조망되는 차량이동 램프시설은 입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외장재 및 색채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 및 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환기설비, 전기전화 통신설비,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지붕 및 옥상난간에 무채색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건축물 지붕과 일체화하여 설치한다. ■ 담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가로경관)’ 제85조 (담장 특화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따른다. ■ 색 채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연구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연구3 (변경없음)	연구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별표1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마. 연구소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법, 건축법령 및 각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물류시설용지(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물류1	물류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상기 시설의 운용·관리·지원하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고높이 2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층 높이는 5.0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한다. 단,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높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 물류시설에 필요한 구조물(급수설비, 환기설비,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 최고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후산림인 병풍산 및 월악산 7부 능선(130.0m) 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물류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건축물의 전면부는 주도로 방면으로 배치하고, 두 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 기준)에 건축물의 전면을 배치한다. 대지 내 하역장은 보행가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보행가로부터 적치물이 노출될 경우 경계부에 차폐식재를 조성한다.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단변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변을 형성할 경우 입면디자인의 분절을 계획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재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재료 본연의 질감과 색채를 살릴 수 있는 외장재 계획을 통하여 과도한 색채 사용에 따른 부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면·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마감수준으로 계획한다. • 마감처리 되지 않은 콘크리트 외벽의 노출을 금하며, 저가의 패널, 드라이비트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저품질의 외장재 사용을 지양한다. • 석계열의 외장재 적용시 단지 전체의 통일감과 조화를 고려하여 무채색 계열을 사용한다. • 건축물 폭이 25m 이상일 경우 입면의 벽면분절, 형태변화, 재질, 색채의 변화 등을 통해 시각적 분절이 되도록 한다. • 외장재를 통한 입면분절 시 3개 이하의 외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창문 및 개구부 설치시 도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치토록 하고, 연속적인 선상에 배치하도록 하여 수직·수평의 입면분절 요소로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변, 가로 결절부, 주출입 구간의 인지성 확보를 위해 주의장재와 대비되는 외장재 (투시성 외장재 적용 권장) 또는 색채적용을 권장한다. • 외벽 창호의 유리는 무채색 계열을 적용하고, 청색·녹색 칼라유리 사용은 지양한다. • 건축물 전면에는 업종 고유의 패턴을 활용한 그래픽디자인은 허용하되, 광고 등을 위한 문구사용을 금한다. • 부속 건축물간 재질, 색채, 형태, 사인물 등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벽면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냉난방 실외기, 우수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매립하되, 기능상 노출이 불가피 할 시 가림막 설치 또는 입면과 동일 색채를 적용하여 외부로 노출을 완화한다. • 보행가로변에서 조망되는 차량이동 램프시설은 입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외장재 및 색채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 및 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환기설비, 전기전화 통신설비,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지붕 및 옥상난간에 무채색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건축물 지붕과 일체화하여 설치한다. ■ 담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1장(가로경관)’ 제85조 (담장 특화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따른다.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별표1. 유치업종계획(기정) >

구분	전략산업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2 제조5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제조1 제조8	디지털정보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제조3 제조7	첨단부품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 존치공장에 한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제조4 제조6	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존치공장에 한함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연구1 연구2 연구3 연구4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업(70)

주) 존치공장에 한해 광산업 부문에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과 첨단부품소재업 부문에 1차금속 제조업(24) 허용하며, 존치공장 업종 변경시에는 상기 유치업종계획 준수

< 별표1. 유치업종계획(변경) >

구분	전략산업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2 제조5 제조7 제조8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제조1	디지털정보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구분	전략산업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3 제조9	첨단부품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 존치공장에 한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제조4 제조6	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존치공장에 한함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연구1 연구2 연구3 연구4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업(70)
물류1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주) 존치공장에 한해 광산업 부문에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과 첨단부품소재업 부문에 1차금속 제조업(24) 허용하며, 존치공장 업종 변경시에는 상기 유치업종계획 준수

라)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단독1 ~ 단독4	단독 주택 용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단독주택 중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 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라. 안마원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 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가. 공연장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너. 제조업소·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범위내,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허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층당 2세대 이하(총 5세대 이하), 점포주택의 경우 총 3세대 이하 합병할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1개 획지당 가구수를 적용한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층부에 필로티 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 부분을 공공의 통행 등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하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은 정남방향으로 이격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평지붕은 지붕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 지붕의 구배는 30~70% 이하,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지붕형태를 평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토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외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서터는 투시형 서터를 설치토록 한다.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용지내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2m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한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70% 이상): <산업단지 색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채도가 높은 색 금지) • 보조색: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 미만): 제한 없음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 단독4	단독 주택 용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 주택 2.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안마원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관장, 지역아동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연장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너. 제조업소·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범위내,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세대수	• 층당 2세대 이하(총 5세대 이하), 점포주택의 경우 총 3세대 이하 • 합병할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1개 획지당 가구수를 적용한다.
		높 이	• 3층 이하 - 단, 1층부에 필로티 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 부분을 공공의 통행 등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하다. • 1개층 높이는 3.0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한다. 단,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높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 단독주택용지의 일조권은 정남방향으로 이격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상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을 2/3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 - 지붕의 구배는 30~70% 이하,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경사지붕은 다양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계획하며 건축매스와 조화로운 형태로 계획한다. • 지붕형태를 평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한다. -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지침 제13조제1항(옥상조경)’의 규정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 지붕색채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벽돌, 석재 등 자연재료의 외장재 사용을 권장하며 색채(도장) 적용시 ‘제3편 제3장(건축물의 색채)’의 규정을 준수한다.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외장재는 재료간 조화를 고려하고, 통일성을 위해 이웃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부공간은 이웃 건축물과 마주보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행 및 활동공간에 대응하도록 가로변으로 건축물 전면성이 확보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전면부는 주도로 방면으로 배치하고, 두 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 기준)에 건축물의 전면을 배치한다. ■ 담장, 대문 등 • 단독주택용지내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1.2m 이하의 생울타리, 목재 등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설치토록 한다. • 수직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범죄예방을 고려한 CPTED 개념 적용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색 채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마)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1 ~ 근린3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라. 안마원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파. 옥외철담이 있는 골프연습장 너. 제조업소, 수리점 더. 단란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러. 안마시술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전면: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기준)에 면하여 정하도록 하며, 20m 이상 도로에 2면 이상 동시에 면할 경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 조경시설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옥상층의 파라펫 등은 조형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경관상 양호한 건축물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옥상부에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반대편 보도에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외 벽 • 각각부의 건축물은 거리의 랜드마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디자인을 모색토록 한다. • 외벽은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마감재료를 달리할 수 있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하며,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에 냉난방 실외기 설치를 불허한다. 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자연재료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1 ~ 근린3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p>「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안마원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파. 옥외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너. 제조업소, 수리점 더. 단란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러. 안마시술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정하며, 1개층 높이는 4.0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한다. 단,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높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 기준)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시설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옥상층 파라펫을 난간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며, 입면과 동일한 외장재를 적용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에 급수설비, 환기설비, 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각각부의 건축물은 거리의 랜드마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디자인을 모색토록 한다. • 외벽은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외장재료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재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하며,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냉난방 시설물 등 부속시설물은 건축물 전면부 배치를 지양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로 노출 시 가림막 등 차폐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인접 건축물과 저층부 높이를 통일하고, 유사한 외장재 및 색채 적용을 통한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대문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 채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바) 지원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7	지원 시설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 기숙사 2.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안마원 사. 마을회관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러. 안마시술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4.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제7호 판매시설 중 다. 상점(단, 해당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6. 제9호 의료시설 중 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7.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 유치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8. 제11호 노유자 시설(단, 노인복지주택 제외) 9.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10. 제14호 업무시설 11. 제15호 숙박시설(지원4, 5에 한함) 12.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바. 정비공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유통업무설비(지원6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단, 지원1은 60% 이하)
			용 적 륜	• 400% 이하(단, 지원1은 36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단, 지원1은 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전면: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정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설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옥상층의 파라펫 등은 조형적 디자인을 고려하여 경관상 양호한 건축물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옥상부에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반대편 보도에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외 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부의 건축물은 거리의 랜드마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디자인을 모색토록 한다. • 외벽은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마감재료를 달리할 수 있다.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서터는 투시형 서터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에 냉난방 실외기 설치를 불허한다. 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허가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자연재료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 기숙사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 지원7	용지		<p>2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라. 안마원 사. 마을회관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p>3.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파.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러. 안마시술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p>4.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p> <p>5. 제7호 판매시설 중 다. 상점(단, 해당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p> <p>6. 제9호 의료시설 중 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p> <p>7.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 유치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p> <p>8. 제11호 노유자 시설(단, 노인복지주택 제외)</p> <p>9.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p> <p>10. 제14호 업무시설</p> <p>11. 제15호 숙박시설(지원4, 5에 한함)</p> <p>12.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바. 정비공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의 유통업무설비(지원6에 한함)</p>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단, 지원1은 60% 이하)
		용 적 륜	• 400% 이하(단, 지원1은 36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단, 지원1은 6층 이하), 1개층 높이는 4.0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한다. 단,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높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배치 및 건축선	<p>■ 건축한계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 도로변 건축물은 이웃하는 건축물과 건축선이 일치되도록 배치한다. <p>■ 건축물의 전면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 기준)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 다만, 20m 이상 도로에 2면 이상 동시에 면할 경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p>■ 지붕 및 옥상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시설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층 파라펫을 난간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며, 입면과 동일한 외장재를 적용한다. • 옥상부에 급수설비, 환기설비, 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p>■ 외벽의 재료, 형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각부의 건축물은 랜드마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디자인을 모색하도록 한다. • 외벽은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이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외장재를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재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p>에서 서로 다른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냉난방 시설물 등 부속시설물은 건축물 전면부 배치를 지양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로 노출 시 가림막 등 차폐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인접 건축물과 저층부 높이를 통일하고, 유사한 외장재 및 색채 적용을 통한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p>■ 담장, 대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p>■ 색 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p>■ 옥외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사) 주차장용지(변경)

- 기 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1 ~ 주차9	주차장 용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 동법 동조 제11호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하고, 주차장 외 허용된 시설은 30% 미만이어야 한다. • 주차장용도 외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허용용도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전시장에 한함)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 세차장, 바. 정비공장 (단, 주거지역에서는 정비공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 이하(주1,2,8) • 준주거지역: 450% 이하(주5), 900% 이하(주3) • 준공업지역: 900% 이하(주4,6,7,9)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주1,2,8) • 준주거지역: 5층 이하(주5), 10층 이하(주3) • 준공업지역: 10층 이하(주4,6,7,9)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제한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용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설치될 경우, 포장은 잔디블럭과 같은 투수성 재료로 포장토록 권장한다.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부에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반대편 보도에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자연재료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1 ~ 주차9	주차장 용지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동법 동조 제11호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하고, 주차장 외 허용된 시설은 30% 미만이어야 한다. 주차장용도 외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제1종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허용용도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전시장에 한함)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 세차장, 바. 정비공장 (단, 주거지역에서는 정비공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 이하(주1,2,8) 준주거지역: 450% 이하(주5), 900% 이하(주3) 준공업지역: 900% 이하(주4,6,7,9)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주1,2,8) 준주거지역: 5층 이하(주5), 10층 이하(주3) 준공업지역: 10층 이하(주4,6,7,9)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공공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폭원 기준)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옥상부에 급수설비, 환기설비, 전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용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설치될 경우, 포장은 잔디블럭과 같은 투수성 재료로 포장토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단,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외장재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 건축물 외장재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면에 냉난방 실외기 설치를 불허한다. 단, 냉난방 시설물 등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 전면과 측면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로 노출 시 차폐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 주차장의 경우, 내부 채광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내부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입면디자인을 권장한다. • 주차장 사인시설은 건축물 입면디자인과 조화로운 규모, 형태, 색채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최상층 벽면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1층에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외벽면 및 도로와 면한 벽면은 70% 이상을 투시성 벽면,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를 권장한다. ■ 담장, 대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색채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2장(건축물의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3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아)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자)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차)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카) 가스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타) 폐수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파) 오수중계펌프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하) 수도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거)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너)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더) 농업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러)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머) 어린이집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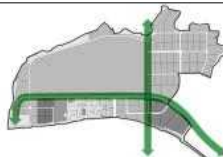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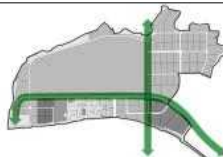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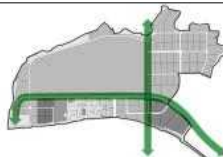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내 용
옥외 광고물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 세로크기는 최대 1m 이하로 한다.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류, 전광류 방법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온류 및 전광류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광고물 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및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등(“+”,“약”)의 경우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점포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던한 이미지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당 1개 이내로 제한(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시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2개 이내 허용)하며, 1층에만 허용한다.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한다.
	<p>주택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광고물중 판류형 간판은 건축물의 1층부에 한하며, 입체형 문자·도형 등의 조각형 간판은 2층까지 허용한다. • 3층 이상 업소는 돌출간판과 건물입구 지주이용간판(연립광고형식)으로 설치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 돌출간판의 하단은 3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지안의 공지	<p>■전면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녹지 제외)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지침도에서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도와 접하는 획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 조성방법”에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시행한다. <p>※ 전면공지 조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부 처리 :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장 :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 포장도 가능하다. • 전면공지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함평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차면적에 산입한다. • 판매시설, 종교시설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떨어져 하는 거리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의 경우에는 빛그린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한계선을 준용하며,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함평군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도로모퉁이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산업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의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면적 3,000㎡ 이하: 1개소 - 획지면적 3,000㎡ 초과: 2개소 -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상 입구·출구 구분설치 가능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의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폭원 7m 이하) -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상 입구·출구 구분설치 가능 • 주차장용지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입구와 출구를 별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용지)의 경우에는 인접부지와 5m 이상 이격하여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른다.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안의 공지	<p>총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녹지 제외)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지침도에서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면공지 내 폭원 0.8m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목, 화훼, 지피류 등을 부분적으로 식재한다. 2. 시설물 설치제한: 전면공지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경계부 처리: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허가 심의위원회에서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포장: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p>건축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지침 제11조 제2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시행한다. • 보도와 면하는 전면공지는 단차발생을 금하며, 보도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를 적용한다. • 전면공지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함평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차면적에 산입한다.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도로모퉁이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 연구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의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면적 3,000㎡ 이하: 1개소 - 획지면적 3,000㎡ 초과: 2개소 -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상 입구·출구 구분설치 가능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종교시설, 공공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폭원 7m 이하) -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상 입구·출구 구분설치 가능 • 주차장용지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입구와 출구를 별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용지)의 경우에는 인접부지와 5m 이상 이격하여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른다.
가로경관	<p data-bbox="261 763 379 1435">공공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종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종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의 고려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의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키큰나무(교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의 가로수는 지하고 1.2미터 이상인 것이야 하며, 수형은 나무의 고유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야 한다. ■ 가로수 식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하여야 한다.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2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0m 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식재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가로수 식재시 가로등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차량진출입부, 횡단보도, Bus-Bay 등 교통시설물 주변은 시야확보를 위해 관목 또는 1.2m이하의 수목 식재를 권장한다. •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정수종을 식재하고, 하부식재를 하도록 한다. •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식재하도록 한다. ■ 보행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전면공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며, 횡단보도, 차량주출입부 턱낮춤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보도 바닥포장은 공공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무채색 계열의 보도포장재 적용(화이트, 그레이, 블랙 조합 권장)으로 정온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제조시설 밀집구간내 가로, 지원 및 근린생활시설변 가로, 단독주택지 밀집구간내 가로 등은 가

구 분	계 획 내 용																					
	<p>급적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시설, 물류시설, 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구간 보도는 지루함 및 단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선의 가로이미지를 완화하는 굴곡, 확산 등 변화감 있는 패턴디자인을 적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채도의 블록의 대지 내 공지로 연결되는 패턴 디자인을 권장한다.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내 공지와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한 보도패턴을 도입하여, 보도-근린생활시설의 자연스러운 보행연계 및 보도 확대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단독주택은 작은 규모의 보도블록을 도입하고 과도하지 않은 패턴도입을 권장한다.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 블라드 등을 설치한다.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를 고려하여 300x300 규격의 블록 설치를 권장한다. 보도 내 공공시설물 배치를 지양하고, 식수대에 배치하도록 한다. <p>■ 자전거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도로와 보도 경계부는 안전을 고려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설치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변에는 가로수를 식재한다. 자전거보관대는 식수대를 활용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p>민간영역</p>	<p>■ 전면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와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공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재, 포장패턴을 적용한다. 포장재는 공공보도와 동일하게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적용한다. 전면공지 내 보도경계로부터 폭원 0.8m의 부분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공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벤치, 바닥조명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하도록 하며, 시설물 형태는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도입하여야 한다. <p>■ 담장 특화디자인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1.2m 이하 높이로 설치하며, 미관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석재로 기단부(높이:0.8m)를 구성하고, 가로변 이용자 시선을 가로막지 않도록 상단부(0.8~1.2m)는 투시성 난간을 설치한다. 타입이 다른 담장을 혼용하여 사용 시 동일가로에서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설치한다. 단지의 진입연결로(동-서)와 통경가로(남-북)변은 자연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형 타입을 응용하여 가로방면에서 보이는 담장면에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한다. <table border="1" data-bbox="411 1489 1484 2049"> <thead> <tr> <th>담장디자인 유형</th> <th colspan="2">적용 구간</th> <th>설치 가이드라인</th> </tr> </thead> <tbody> <tr> <td>① 기본형</td> <td>민간 영역</td> <td>전구간</td> <td>제조시설 담장의 총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하고, 기초 높이는 0.8m 석재, 기초 상단부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td> </tr> <tr> <td rowspan="2">② 녹지형</td> <td rowspan="2">민간 영역</td> <td>진입연결가로 (동-서) 통경가로 (남-북)</td> <td rowspan="2">기본형과 혼용하여 사용 가능 단, 동일가로에서는 규칙적으로 설치 (ex. 1:1. 1:2...)</td> </tr> <tr> <td></td> </tr> <tr> <td>③ 보안형</td> <td>민간 영역</td> <td>시설 기능상 보안이 필요한 구간</td> <td>보안형 담장은 총 높이 2.5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초 높이는 0.8m 석재, 기초 상단부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CCTV설치 시 난간과 통합하여 설치한다.</td> </tr> <tr> <td>④ 사인물 통합형(진출입구간)</td> <td>민간 영역</td> <td>제조시설용지 진출입 구간</td> <td>주출입부 우측 또는 좌측에 1개소 설치한다.</td> </tr> </tbody> </table>	담장디자인 유형	적용 구간		설치 가이드라인	① 기본형	민간 영역	전구간	제조시설 담장의 총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하고, 기초 높이는 0.8m 석재, 기초 상단부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② 녹지형	민간 영역	진입연결가로 (동-서) 통경가로 (남-북)	기본형과 혼용하여 사용 가능 단, 동일가로에서는 규칙적으로 설치 (ex. 1:1. 1:2...)		③ 보안형	민간 영역	시설 기능상 보안이 필요한 구간	보안형 담장은 총 높이 2.5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초 높이는 0.8m 석재, 기초 상단부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CCTV설치 시 난간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④ 사인물 통합형(진출입구간)	민간 영역	제조시설용지 진출입 구간	주출입부 우측 또는 좌측에 1개소 설치한다.
담장디자인 유형	적용 구간		설치 가이드라인																			
① 기본형	민간 영역	전구간	제조시설 담장의 총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하고, 기초 높이는 0.8m 석재, 기초 상단부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② 녹지형	민간 영역	진입연결가로 (동-서) 통경가로 (남-북)	기본형과 혼용하여 사용 가능 단, 동일가로에서는 규칙적으로 설치 (ex. 1:1. 1:2...)																			
																						
③ 보안형	민간 영역	시설 기능상 보안이 필요한 구간	보안형 담장은 총 높이 2.5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초 높이는 0.8m 석재, 기초 상단부 투시형 난간을 설치한다. CCTV설치 시 난간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④ 사인물 통합형(진출입구간)	민간 영역	제조시설용지 진출입 구간	주출입부 우측 또는 좌측에 1개소 설치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 대지내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7번 녹음이 있는 보행공간 형성 및 공장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을 저감하기 위해 대지내 녹지대를 조성하고, 제85조 (담장 특화디자인에 관한 사항) 중 녹지형 타입의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 ■ 단지 진입구간 진입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조형물은 진입가로변 완충녹지에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색 채	<p>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인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및 「『2030년 함평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색채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내 공업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교육용으로 채택된 먼셀(Munsell)표색계를 기준으로 하여 용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민간 창의성 및 융통성 발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며, 허가(심의)시 또는 별도의 색채계획 심의를 통해 제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및 『2030년 함평군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증명도, 저채도 계열을 사용하도록 제조시설용지 색채가이드라인을 계획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R계열~B계열, N)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중·고명도(5.0~9.5), 저채도(2.0 이하)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사용하고, 중·고명도(4.0~10.0), 저채도(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강조색은 빛그린 산업단지 권역별 강조색을 사용하고, 중·저명도(5.0이하), 중·저채도(7.0~8.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권역별 강조색은 톤인톤(유사한 명도, 채도 범위 사용) 배색을 사용한다. • 산업적인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느낌의 Warm Tone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권역별 강조색을 활용한 권역별 색순환을 통해 산업시설이 가지는 삭막한 경관형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건축물 입면 색채변화는 저층부로 색 명도 및 색수를 제한하여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 연구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명도의 주조색과 증명도의 보조색, YR계열의 강조색을 사용하고, 자연마감재를 이용한 색채계획을 권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R계열~B계열, N)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중·고명도(5.5~9.5), 저채도(2.0 이하)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사용하고, 중·고명도(4.0~10.0), 저·중채도(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강조색은 빛그린 산업단지 권역별 강조색(YR계열)을 사용하고, 중·저명도(5.0이하), 중채도(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강조색의 사용범위는 기능성이 부각되는 부분(주출입부 등)에 한해 적용한다. ■ 물류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은 YR계열의 이미지 색채를 부각시키고, 회색조의 차분한 색채를 기조로 사용하여 위압감을 주지 않는 색채계획을 제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R계열~B계열, N)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중·고명도(5.5~9.5), 저채도(2.0 이하)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사용하고, 중·고명도(4.0~10.0), 저·중채도(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강조색은 빛그린 산업단지 권역별 강조색(YR계열)을 사용하고, 중·저명도(5.0이하), 중채도(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주거지 색채경관을 연출하고, 자연경관에 근거한 색채와 외장재를 건축 입면에 적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R계열~GY계열, N)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중·고명도(6.5~9.5), 저채도(2.0 이하)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사용하고, 중·고명도(3.0~8.5), 중채도(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강조색은 빛그린 산업단지 권역별 강조색(YR계열)을 사용하고, 저명도(4.0이하), 중채도(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따뜻한 Warm Tone의 YR계열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정주공간의 색채계획을 제시한다. •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자연재료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R계열~BG계열, N)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중·고명도(6.5~9.5), 저채도(2.0 이하)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사용하고, 중·고명도(3.0~8.5), 중채도(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강조색은 빛그린 산업단지 권역별 강조색(YR계열)을 사용하고, 중·저명도(6.0이하), 중채도(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활기부여를 위해 강조색은 제시된 채도 범위 내 3.0~6.0이하 구간에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은 중·고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정연하고, 모던한 색채계획을 적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R계열~BG계열, N)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중·고명도(6.5~9.5), 저채도(2.0 이하)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사용하고, 중·고명도(3.0~8.5), 중채도(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강조색은 빛그린 산업단지 권역별 강조색(YR계열)을 사용하고, 중·저명도(5.0이하), 중채도(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기타·공공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시설은 N계열의 색채를 기초색으로 사용하여 배경이 되는 건축물로의 색채경관을 연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R계열~BG계열, N)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중·고명도(5.5~9.5), 저채도(2.0 이하)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의 범위를 사용하고, 중·고명도(4.0~10.0), 중채도(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3. 강조색은 빛그린 산업단지 권역별 강조색(YR계열)을 사용하고, 중·저명도(5.0이하), 중채도(6.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대상지 내 공공건축물 간 공통된 톤의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사인물 등 인지성을 요하는 부분에 한해서 강조색 적용을 권장한다. ■ 경관개선을 위한 특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용도를 아우르며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강조색을 이용한 톤인톤(Tone in Tone)의 유사한 명채도를 사용하여, 주거경관에서 산업경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색채경관을 조성한다. • 기능적인 특성과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는 곳에 강조색을 적용하여 지루하지 않고 다양성이 있는 색채경관을 조성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1. 가로 결절부에 외장재 차별화 및 강조색 적용을 통해 시각적 차별화와 다양성을 확보한다. 2.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통일성 부여를 위해 저채도-저명도의 색채 및 자연소재를 기반부에 적용한다. 3. 사용자의 아이레벨을 중심으로 주출입구 또는 캐노피 등에 강조색을 적용하여 기능 중심의 포인트 색채경관을 조성한다.
옥외 광고물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지침 • “빛그린 산업단지”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한다. •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구조례”라 한다),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군조례”라 한다)에 따르며, 별도의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 규격을 벗어나는 광고물은 주 도로에서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한 디자인 검토를 하도록 하며, 반드시 도·시·군 심의위원회(건축심의 및 실시설계 시)의 심의를 거쳐 관리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한다. ※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한다.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하여 설치를 허용한다. ※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등의 재질 및 색채 •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재질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형광도로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식적이고 불필요한 디자인은 지양하며,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광고물 등의 형태 및 규모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류, 전광류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온류 및 전광류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형 광고물 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등(“+”,“약”)의 경우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형 간판의 경우 색깔변화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영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및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 지역)은 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설별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이용간판 • 1개 업소 1개 간판 표시는 가능하되, 건물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구 분	계 획 내 용
의 표시방법	<p>1.2m²이하 간판,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경우 추가 설치 가능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및 상호 등 하나의 표시가 가능하다. 2.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연면적 5천m²이상의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1개의 간판으로 표시한다. (단,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로 표시한다.(단,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 세로크기는 도·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4.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3m, 4층 이상 15층 이하는 0.4m(도로 위 공간을 점용하지 않을 경우 0.7m) 면적은225m²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 전광류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1.8m로 표시한다. 5. 건물의 가장 높은 층 규격으로 가로 3m 이내, 세로 건물높이의1/2 이내로 입체형 또는 도료등으로 직접 표시한다. 6. 전광류의 면적은 4m²이하로 점멸 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한다.(단, 지주이용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7.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준거지역의 경우 7층 이하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하다.) <p>■ 지주이용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장소, 부지에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한다.(단,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 불가인 경우 도·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2. 도시지역 지주이용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1면의 면적 10m² 이내, 합계면적 40 m² 이내로 표시한다. <p>■ 산업시설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이용간판 : 1개 업소 1개 간판 표시가 가능하되,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건물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경우 추가 설치 가능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 도로 방향으로 1업체 1개소로 설치하되,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는 경우, 도로에 추가설치를 허용한다. 2. 가로 폭은 건물 전체 가로길이의 1/3이내, 높이는 3m 이내로 권장한다.(단, 건축길이가 100m 이상인 대규모 장변의 산업건축물에 대해서는 입면의 동일 높이 선상에 추가 1개 설치를 허용하며 1개만 설치 할 경우 높이 완화를 허용한다. 3. 규격을 벗어나는 광고물은 건축심의(실시설계)시 주 도로에서의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한 디자인을 검토하도록 한다. 4. 건물상단(최상층)우측 설치를 권장하며, 입체문자로 표기, 지지대 또는 배경패널을 설치할 경우 입면과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단, 인접 건물에 의한 차폐 등 위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심의(실시설계)단계에서 위치를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절부 특화구간사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절부에 해당하는 2개 도로에 면하도록 배치 권장한다. 2. 가로 10m 이내, 세로 건물 최고높이(1층 제외) 이내로 설치 권장한다. 3.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시인성을 고려한 위치·색채를 권장한다. • 진입부 사인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장과 연계하여 통합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p>■ 기타·공공시설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시설용지의 옥외광고물 등의 지침은 “법”, “영”, “구조례”, “군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행정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 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수량을 산정하고, 설치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에 관한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5 전라남도 경관계획」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20)」 수립시 설정한 기본 방향 준용을 한다. 빛그린산업단지 2단계 구간의 공공시설물 중 교통보행시설물, 편의휴게시설물, 공급관리시설물 3가지 시설유형, 10개소 개별시설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0)」 준용한다. 식수대 공간(시설물 설치구역)을 활용하여 가로시설물을 배치하여, 시설물에 의한 보행공간의 잠식 및 협소화 방지하도록 하며, 식수대 내 가로수 하부식재를 통해 배전함 등 가로시설물의 시각적 돌출을 완화하도록 한다. 교통시설물 및 안내시설물은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하거나 통합된 통합지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보행공간에서 가로시설물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공공매체(사인시스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눈높이를 고려한 가독성 높은 사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저명도, 저채도의 기초색을 적용하여 시각적 공해를 저감한다.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요소(가로수, 신호등, 도로시설물 등)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도한 디자인 및 심볼마크 등의 사용은 지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향유도사인의 경우 가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이용자의 주요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과 이용자의 방향감각 상실이 우려되는 곳에 배치한다. 버스정류장사인의 경우 버스 쉼터와 기본 색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권장한다. 															
야간경관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가이드라인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발광표면 휘도, 공간별 조도 기준(KS A 3011)을 기준으로 하여 용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산업시설이 밀집된 사업지구의 성격에 따른 야간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가로의 건축물 입면을 활용한 경관조명을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권장사항으로 하여 야간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단지가 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의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출입부 공간은 주변 공간에 비해 3배 이상의 밝기를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입면 및 저층부, 경계부 공간(담장)을 이용한 조명적용을 권장한다. 건축물 조명연출 시 다운라이트를 권장하여 조명에 의한 누광을 최소화한다. 컬러 움직임 및 빠른 움직임을 통한 조명연출을 금하며, 조명기구는 주야간의 경관 및 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와 함께 주변 건축물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조명 기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휘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휘도 대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3 ~ 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균 휘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25cd/m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대 휘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cd/m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색온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 ~ 5,000k</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연색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 Ra 80</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휘도	휘도 대비	1:3 ~ 1:5	평균 휘도	25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최대 휘도	300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색온도		4,000 ~ 5,000k	연색성	
구 분		기 준															
휘도	휘도 대비	1:3 ~ 1:5															
	평균 휘도	25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최대 휘도	300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색온도		4,000 ~ 5,000k															
연색성		> Ra 80															

구 분	계 획 내 용																																
	<p>■ 지원시설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구 조명특화를 통해 진입공간의 인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지원시설 건축물 저층부 입면요소를 이용하여 야간 인지성 및 상징성을 부여한다. 공지 내 바닥면 돌출조명 등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건축물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건물의 색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실내조명의 활용을 통한 보행자레벨의 저층부를 밝히는 방식을 권장하며, 칼라조명 연출 및 빠른 움직임을 통한 계획을 지양하고 점멸이나 영상조명은 금지한다. 고층부는 필요 없는 빛을 내지 않음으로써 광공해, 현회 억제 및 옥탑부의 과도한 빛을 지양하고, 상징성과 통일성을 부여하여 산업단지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도록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시설용지 건축물의 조명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399 689 1460 898">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휘도</td> <td>휘도 대비</td> <td>1:3 ~ 1:5</td> </tr> <tr> <td>평균 휘도</td> <td>25cd/m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td> </tr> <tr> <td>최대 휘도</td> <td>300cd/m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td> </tr> <tr> <td colspan="2">색온도</td> <td>3,500 ~ 4,000k</td> </tr> <tr> <td colspan="2">연색성</td> <td>> Ra 80</td> </tr> </tbody> </table> <p>■ 주거시설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명은 단순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한다. 활기있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을 권장하며, 보행로는 건축물 조명, 간판조명, 쇼윈도 조명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건축물 하층부에서 상층부까지 과도한 휘도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기를 조화롭게 연출하도록 한다. 내부조명을 경관조명의 요소로 활용하며, 건축물 외부조명과 실내조명이 조화롭게 연출한다.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출입문, 정원, 지상주차장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감시하도록 하며,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을 설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주거시설용지 건축물의 조명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399 1370 1460 1579">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휘도</td> <td>휘도 대비</td> <td>1:3 ~ 1:5</td> </tr> <tr> <td>평균 휘도</td> <td>15cd/m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td> </tr> <tr> <td>최대 휘도</td> <td>180cd/m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td> </tr> <tr> <td colspan="2">색온도</td> <td>2,000 ~ 3,200k</td> </tr> <tr> <td colspan="2">연색성</td> <td>> Ra 80</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휘도	휘도 대비	1:3 ~ 1:5	평균 휘도	25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최대 휘도	300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색온도		3,500 ~ 4,000k	연색성		> Ra 80	구 분		기 준	휘도	휘도 대비	1:3 ~ 1:5	평균 휘도	15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최대 휘도	180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색온도		2,000 ~ 3,200k	연색성		> Ra 80
구 분		기 준																															
휘도	휘도 대비	1:3 ~ 1:5																															
	평균 휘도	25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최대 휘도	300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색온도		3,500 ~ 4,000k																															
연색성		> Ra 80																															
구 분		기 준																															
휘도	휘도 대비	1:3 ~ 1:5																															
	평균 휘도	15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최대 휘도	180cd/m ² 이하 (조명환경관리구역 발광표면휘도 기준 적용)																															
색온도		2,000 ~ 3,200k																															
연색성		> Ra 80																															
공공영역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p>■ 공원 및 녹지 야간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시설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 관리해야 하며, 공원입구, 통로, 등에 설치되는 표지판, 안내시설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야간에도 식별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예방을 증진한다. 연출하고자 하는 수목 부분에 따른 조명기구 배광 및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수형에 따른 조명기구 배치 및 연출로 대상물 외로 새어나가는 빛을 최소화한다. 파고라 및 벤치주변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식물 및 시설물의 색을 이용자가 인식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한다.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조명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활동량이 적은 22시 이후에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제외하고 소등하도록 운영 계획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는 기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따르며,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한다.

< 공원 및 녹지 조명 속성 >

구 분	추천조도(lx)
전반	6-10-15
주된장소	15-20-30
매우 복잡한 장소	30-40-60
복잡한 장소	15-20-30
일반장소	6-10-15

- 도로 야간경관
- 모든 도로(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포함)의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도로조명 밝기기준-KS A 3701, 도로조명 설계기준 KS C 7611), LED보안등에 대한 기준표 KSC 7658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가로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광색은 연색성이 높고 따뜻한 계열의 선택으로 공간의 편안함을 도모한다.
- 가로의 조도는 도로별 위계(폭원 기준)나 특성, 주변경관에 따라 음영의 밸런스가 잡히도록 계획한다.
- 도로의 위계(폭원 기준)에 따라 하위로 갈수록 색온도와 조도가 점점 낮아지도록 연출하도록 한다.
-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조도 및 연색성 지수(Ra)는 80이상으로 하여 설치함을 권장한다.
- 조도 기준에 맞춰 도로폭 별로 산출하여 설치 간격 및 가로등의 폴 높이를 설정하며, 색온도는 차도는 4,000~5,000K, 보행로는 3,000~4,000K로 권장한다.
- 상향광과 누출광의 제어를 위해 컷-오프(cut-off)형 배광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불쾌한 눈부심을 주지 않는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 통합형 지주대를 활용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체적으로 설치하며, 벤치 등 가로시설물을 활용한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주 광원과 보안등은 LED를 사용하며, 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빛의 산란이 적은 장파장대역의 나트륨램프의 허용이 가능하다.
-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평균노면휘도를 그 기준치보다 1/2로 감광할 수 있으나, 최소한 0.5cd/m² 이상을 확보한다.

< 차도 가이드라인 >

구 분	대로(25m 이상)	중로(12m 이상~25m 미만)	소로(12m 미만)
램프	LED, 고연성 나트륨 램프		
배광방식	컷오프형		
램프설치높이	9~12m	9~12m	9~12m
연색성	Ra 80 이상		
평균노면휘도	1.5cd/m ²	1.0cd/m ²	0.75cd/m ²
종합균제도	0.4 Lmin/Lavg		
차선축균제도	0.7 Lmin/Lmax	0.5 Lmin/Lmax	

- 보행자가 보도상의 단차나 장애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존재나 행동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 조명기구 설치 높이는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고 주변 식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p>< 보도 가이드라인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진입연결가로</th> <th style="width: 25%;">일반가로</th> <th style="width: 25%;">주거지역 가로</th> </tr> </thead> <tbody> <tr> <td>램프</td> <td colspan="3">메탈할라이드, 세라믹 램프, LED, 고연성 나트륨 램프</td> </tr> <tr> <td>배광방식</td> <td colspan="3">컷오프형</td> </tr> <tr> <td>램프설치높이</td> <td>4~6m</td> <td>4~6m</td> <td>3.5~5m</td> </tr> <tr> <td>연색성</td> <td colspan="3">Ra 80 이상</td> </tr> <tr> <td>수평면조도</td> <td>10~20 lx</td> <td>5~10 lx</td> <td>3~5 lx</td> </tr> <tr> <td>연직면조도</td> <td>2~4 lx</td> <td>1~2 lx</td> <td>0.5~1 lx</td> </tr> </tbody> </table>			구 분	진입연결가로	일반가로	주거지역 가로	램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 램프, LED, 고연성 나트륨 램프			배광방식	컷오프형			램프설치높이	4~6m	4~6m	3.5~5m	연색성	Ra 80 이상			수평면조도	10~20 lx	5~10 lx	3~5 lx	연직면조도	2~4 lx	1~2 lx	0.5~1 lx
구 분	진입연결가로	일반가로	주거지역 가로																												
램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 램프, LED, 고연성 나트륨 램프																														
배광방식	컷오프형																														
램프설치높이	4~6m	4~6m	3.5~5m																												
연색성	Ra 80 이상																														
수평면조도	10~20 lx	5~10 lx	3~5 lx																												
연직면조도	2~4 lx	1~2 lx	0.5~1 lx																												
가로 및 진입거점 야간경관 연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가로 및 진입거점 연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의 연속성 내에서 산업단지 상징성을 확보하고 야간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가로 및 공간에 대한 야간 특화요소를 도입한다. ■ 진입연결가로 연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부분은 충분한 조도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035 전라남도경관계획 건축물 조명 디자인 원칙 중 산업건축물 조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야간 우범화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운영계획을 통해 야간에도 전체 광원 및 광량의 60%이상의 밝기를 유지한다. • 도로상의 연속성 속에서 빛의 밝기와 색, 조명의 위치 등에 변화를 주어 변화감을 표현하고 주요 교차로의 색온도 차별화로 야간에 인지성을 확보한다.(차도 색온도 :5000K, 보행로 색온도 : 3000K 권장) • 보행 시 눈부심을 방지하고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고 균제도를 확보하여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 단독주택 주변의 녹지에는 진출입의 안전성을 위하여 블라드 및 낮은 보안등 적용을 권장한다. • 공업건축물 조명연출 시 다운라이트를 권장하고 누광을 최소화하며, 건축물 입면 및 저층부를 이용한 조명을 적용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지원시설이 위치한 가로의 경우 저층부 내부 조명을 활용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확보한다. ■ 순환연결가로 연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근무자 보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조시설 진입부 사인물 및 건축물 입면, 담장을 활용한 다운라이트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민간영역) • 보차혼용도로의 경우 보행자 야간 안전성을 위하여 고보조명 설치를 권장하며,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은 조명 설치를 추가하고 충분한 밝기를 확보한다.(공공영역) •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빛의 사각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KS A 3701 도로조명기준 적용) ■ 진입거점 사인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진입 인지성 확보를 위해 빛그린산업단지 사인조형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직접조명, 발광조명 설치 금지하고 은은한 조도 기준을 적용한다. • 화려한 색상은 배제하고 눈부심이 발생하는 조명은 지양하며,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은 지양한다. 																														
공원녹지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보행자전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 및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하여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전용도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재료는 보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집·분산도로와의 교차 접속부는 원칙적으로 차도용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차량의 속도제한 및 시인성을 높이도록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식재 및 시설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과 연결한 8m이상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방지를 위한 블라드를 1.5m~2m 간격으로 배치토록 한다. • 조명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조성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의 분포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시설을 차별화시켜 도입하여 공원 선택의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 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 근린공원 조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린공원별로 주요 도입 식재수종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되, 가급적 인접한 공원과 구분되는 경관적 특화가 되도록 조성한다. 2. 근린공원1은 가로변 열린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개방하고, 휴게시설물, 편의시설물 등을 배치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어린이공원 조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공원 경계부의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토록 한다. 2. 어린이공원 경계부 지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보행자의 자연감시를 통한 안전한 어린이 공원을 형성한다. • 사계절 푸른 숲 조성을 위하여 공원 진입부에 마운딩 처리 후 장송군식 식재 방식을 도입토록 하도록 하되, 공원의 성격·조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토록 한다. ■ 공원내 도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되, 친환경 저전력 조명기기인 LED조명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 우수지와 중복으로 조성되는 근린공원의 경우, 인접 시설과의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지에 의한 보행동선 단절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도에 면하는 공원은 소규모 포켓쉼터를 조성하고, 포켓쉼터는 그들이 제공되는 수종을 식재한다. • 기념비 등 사업구역내 역사·문화의 보전을 위한 공간을 공원내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조성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중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토

구 분	계 획 내 용
	<p>록 하며, 필요시 방음дук(1~2m)형태로 조성토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풍산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는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이외의 편의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고, 수목식재 면적을 확대하여, 녹음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모색하되, 야간 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보안등을 설치토록 한다. • 제7의 대규모 건축물 장변 매스감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가로변 대지내 경계부에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사계절 모두 차폐될 수 있는 수종을 우선 채택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 대상지 개발로 인하여 산악지역의 접근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산책로 등 연계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p>■ 완충녹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면하는 완충녹지는 보도경계로부터 2m 이내 소규모 포켓쉼터를 (2개소 이상 권장) 조성한다. • 진입연결가로변 완충녹지는 마운딩으로 조성하고, 다층식재를 도입한다. • 보도변 완충녹지는 소규모 포켓쉼터를 조성하고, 포켓쉼터는 그들이 제공되는 수종을 식재한다. • 진입연결가로변 완충녹지 조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연, 소음, 분진 등 공해에 강하고 풍성한 수종(권장수종 :메타세콰이어, 소나무, 단풍나무 등)을 선정하고 다층식재를 통해 단독주택지로의 방음, 차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2. 완충녹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변 용지(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로 보행연결을 기여하며 자연친화적 소재의 포장재를 적용한다. 3. 산책로의 주야간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친환경 저전력 조명기기(LED조명, Cut off형 조명)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마운딩형 완충녹지 조성으로 단독주택지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5. 보도와 인접한 완충녹지 내 일괄된 간격으로 소규모 포켓쉼터 (2개소 이상 권장)을 조성한다. <p>■ 경관녹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녹지 경계부는 시야 개방감을 확보를 위해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식재한다. • 경관녹지의 시설물 설치 및 이용공간 조성은 경관녹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용한다. • 배후산림(월악산, 칠봉산 등)과 조화로운 식재를 위해 원식생(편백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한다.
<p>옹벽발생 구간</p>	<p>■ 산지연접부(경관녹지) 옹벽발생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연접부 옹벽발생구간은 수직적 옹벽의 도입을 지양하나 안전을 고려한 콘크리트 옹벽 설치 시 경사형 옹벽 설치로 기울기를 완화하여 주변 용지로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대규모 옹벽 발생을 지양하나 불가피한 옹벽 발생 시 도로, 인접 용지에서 위압감을 완화하기 위해 식생 등 녹지요소를 도입하여 배후 산림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옹벽을 조성한다. • 수목선정에 있어 지역성, 계절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식생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향토수종 또는 자생수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수고·수형이 우수하여 시각적 경관효과가 뛰어난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p>■ 대지 내 옹벽발생구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 내부 근로자의 시각적 위압감 저감을 위해 콘크리트 옹벽은 지양하고, 화계형 계단식 옹벽, 식생보강토옹벽에 식재 기반 을 조성 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소나무, 단풍나무 등)을 다양하게 식재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내 옹벽발생 시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자연적인 조기 회복을 도모하는 절토사면 복원을 권장한다. • 옹벽과 공지가 면하는 경우 공지 내 관목, 아교목, 교목 등 다층식재를 권장하여 옹벽 위압감을 완화한다.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빛그린산업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4,073,833.2	-	4,073,833.2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062-613-6094),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업경제과(062-960-6976),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2), 함평군청 미래전략실 산업단지관리팀(061-320-159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